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16-44호

2016년 9월 22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3호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6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7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8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2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5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양도신고 수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6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9호	제30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1호	측량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2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윤위 공고 제2016-5호	기초자치단체의원의 재산등록사항(수시신고) 및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6-16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2-6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6-120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16-162호	광양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3호)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광양시 공고 제2016-1570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담양군 고시 제2016-79호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담양군 고시 제2016-80호	담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담양군 고시 제2016-81호	담양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16-156호	해남 화원농협 주유소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16-129호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16-130호

무안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함평군 공고 제2016-606호

함평 내교지구 1단계 침수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3호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제3959호, 2015.10.5. 제정) 제10조에 따라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2. 고시이유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라남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함.
3.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 시간급 7,688원 / 월 1,606,790원(209시간 기준)
 - ※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고용노동부]
4. 기 타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과 (노사협력팀 286-3792)로 연락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6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대상시설(지역)			지정(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지역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점유자)				
보 립 교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원 (지방도 820호선)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 개축	A	노후교량 개축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기존등급 D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7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장성군 소재 ‘장성 향교 등 29건’

연번	지정 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비고
1	유형문화재 제105호	장성 향교	장성군 장성을 성산리 109외	
2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14	
3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사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302-1	
4	유형문화재 제13호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36-1외	
5	유형문화재 제162호	서능 정려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128	
6	유형문화재 제131호	장성 내계리 오충석탑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51	
7	기념물 제54호	봉암서원	장성군 장성을 장안리 19외	
8	기념물 제63호	고산서원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252외	
9	기념물 제70호	요월정 원림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171	
10	기념물 제241호	장성 고경명 신도비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430-2	
11	기념물 제78호	조영규 정려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63, 267-8, 880-9, 881-17	
12	기념물 제186호	장성 영천리 방울샘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1415-3외	
13	기념물 제198호	장성 박수량 백비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산33-1	
14	기념물 제219호	장성 김인후 신도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	
15	문화재자료 제242호	장성 이진환가옥 사랑채	장성군 장성을 백계리 478	
16	문화재자료 제119호	칠현 유적지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24	
17	문화재자료 제100호	관수정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610	
18	문화재자료 제97호	청계정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245-1	
19	문화재자료 제98호	만곡사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75외	
20	문화재자료 제99호	기영정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560	

연번	지정 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비고
21	문화재자료 제128호	금성나씨 심강문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259-2	
22	문화재자료 제241호	장성 김인후 난산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	
23	문화재자료 제103호	수산리 오충석탑	장성군 장성읍 유평리 1437-39	
24	문화재자료 제101호	진원리 오충석탑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109-12	
25	문화재자료 제112호	장성 진원성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신97외	
26	문화재자료 제179호	청류암 관음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1-2	
27	문화재자료 제208호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515-2외	
28	문화재자료 제228호	장성 영천리 고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0	
29	문화재자료 제229호	장성 유평리 부귀동 고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41-1외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74조
-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 제37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다음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확인처
 -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문화예술과 자료실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6년 9월 22일(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
- 연락처 : 전화 (061)286-5452

나.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연락처 : 전화 (061)390-7226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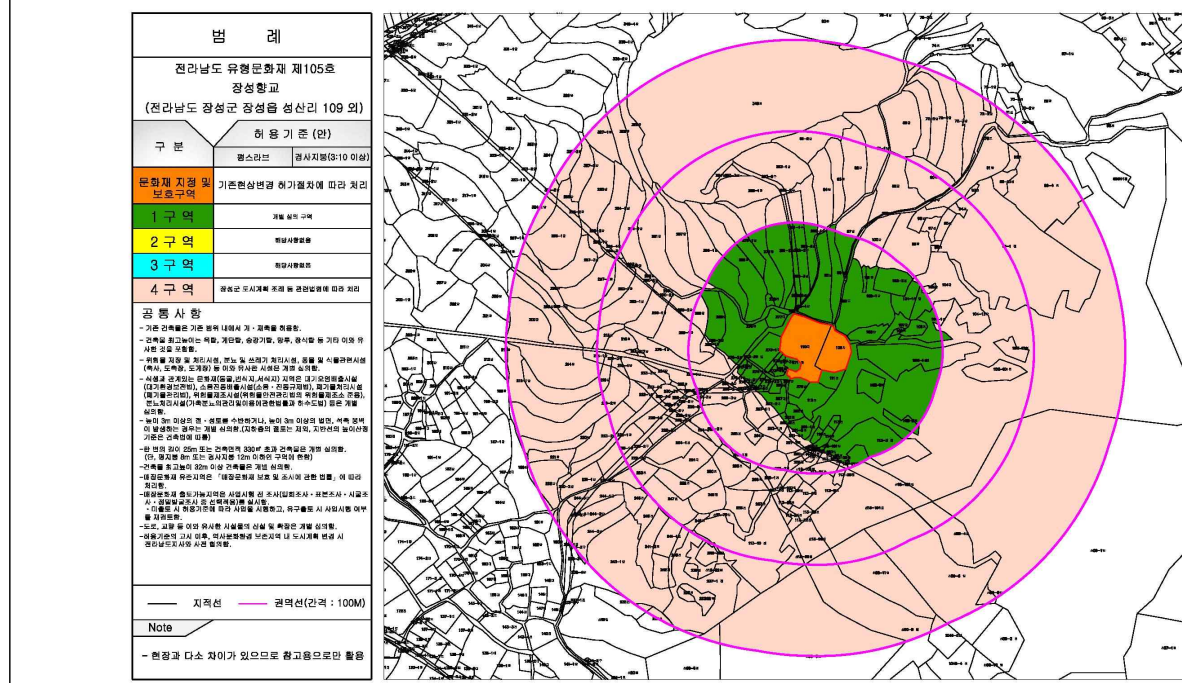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장성향교

○ 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109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해당사항없음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 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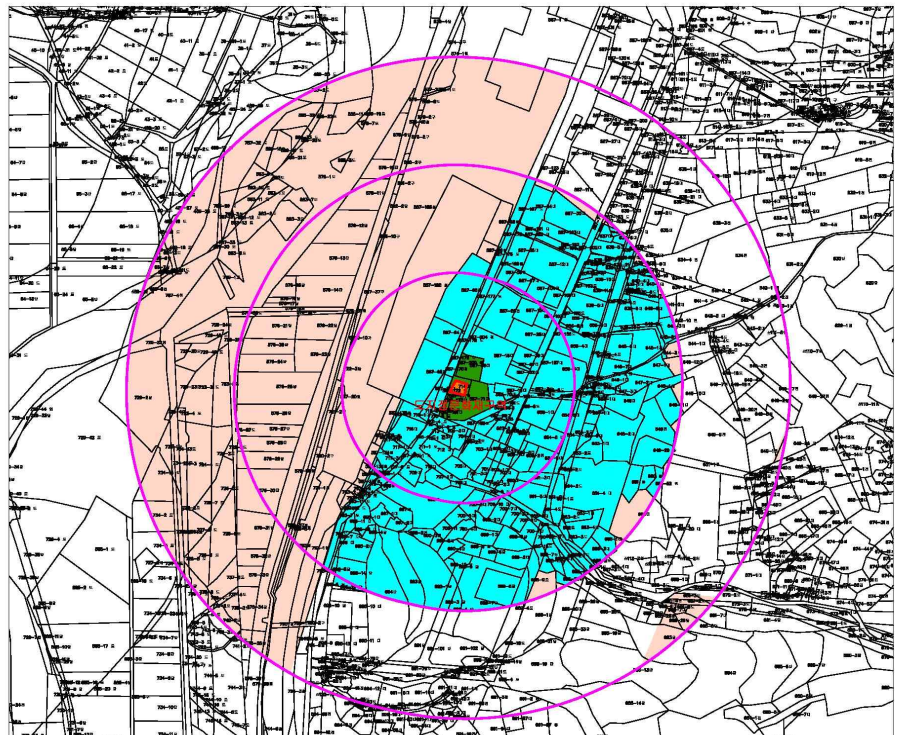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14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벽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응)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오산창의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법 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14)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존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사항없음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벽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응)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간격 :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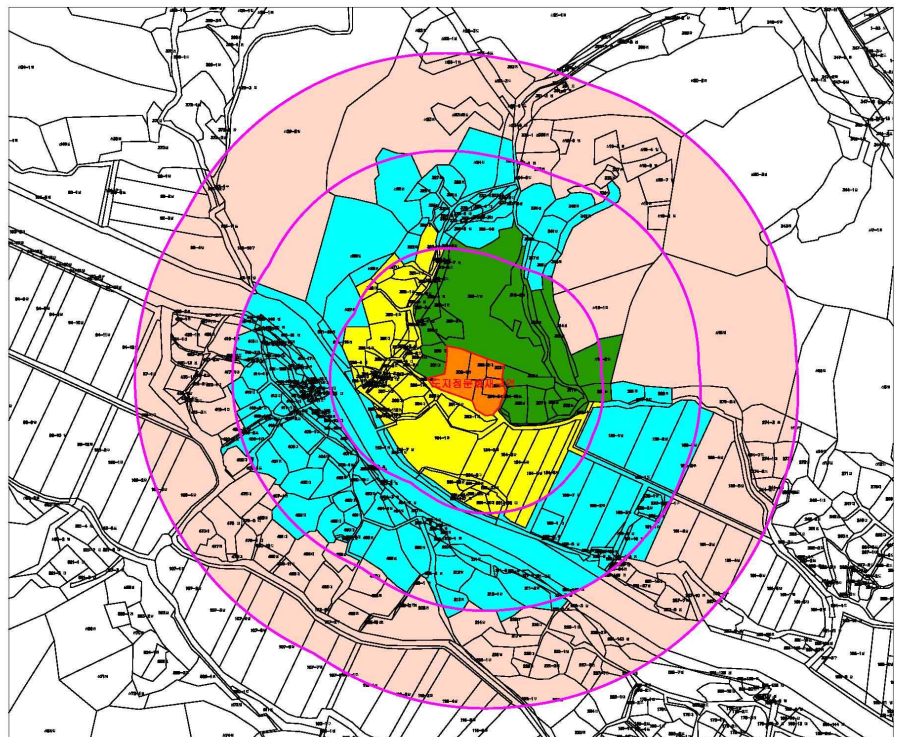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302-1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오산창의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장성 오산창의사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302-1 외)	
구 분	허 용 기 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사항없음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계선 ————— 권역선(간격 : 100M) Note -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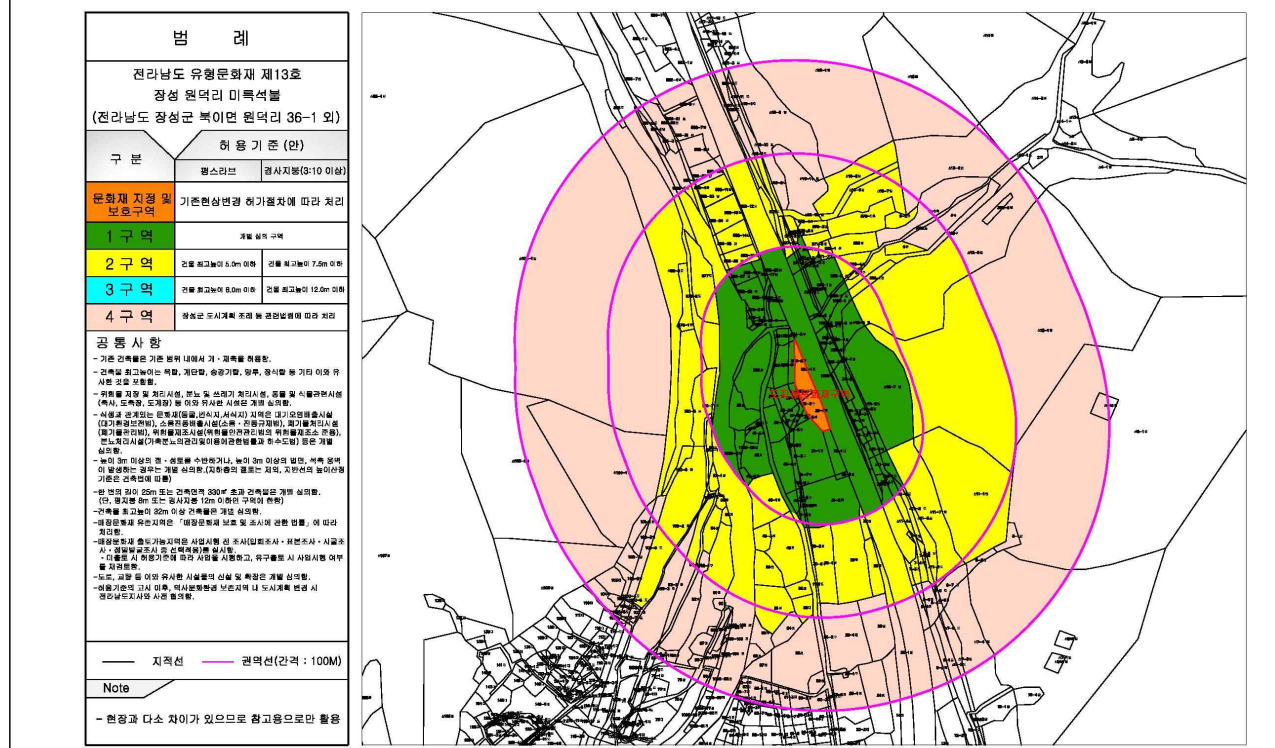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호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

○ 소 재 지 :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36-1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 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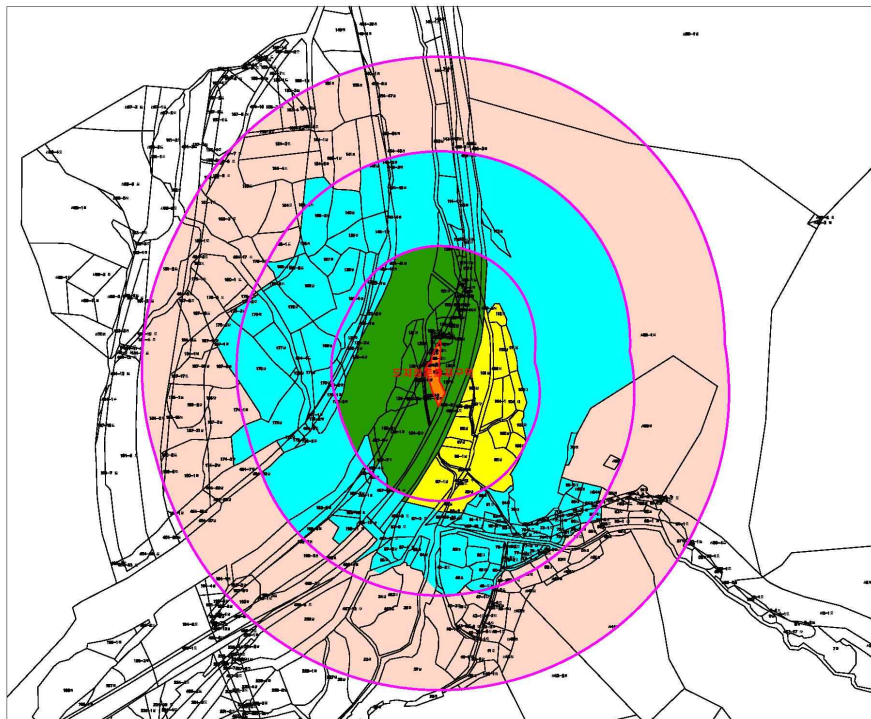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서능정려비
- 소재지 :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128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인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서능정려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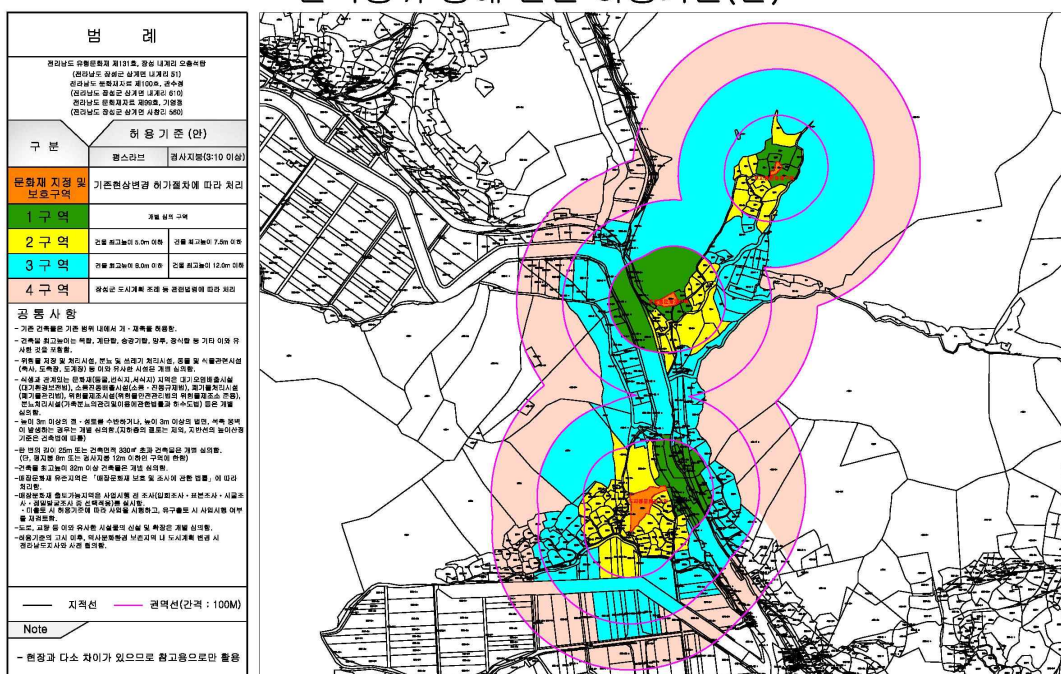
범 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서능정려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128)		
구 분	허 용 기 준 (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구 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인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장성군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력선 —— 권역선(반경: 100M)		
Note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장성 내계리 오층석탑,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관수정,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 기영정
-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51,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610,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560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신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내계리 오층석탑, 관수정, 기영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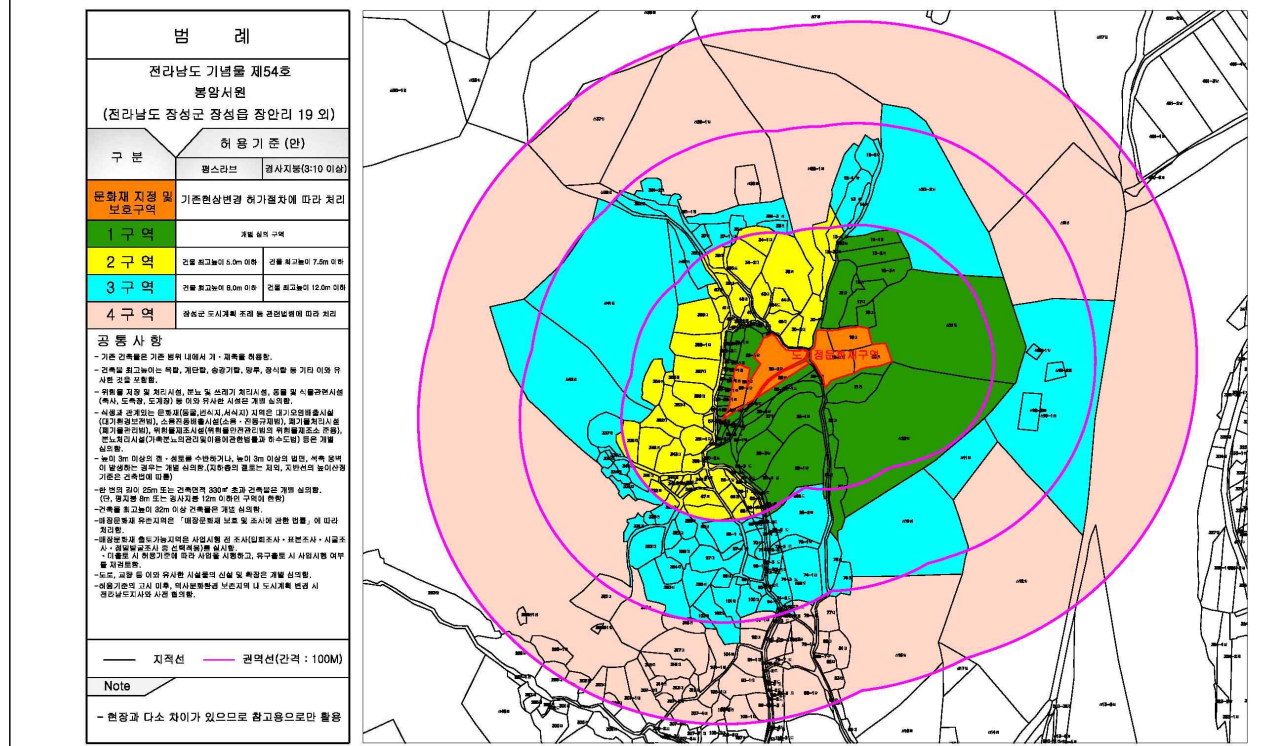
□ 전라남도 기념물 제54호 봉암서원

○ 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19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봉암서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 고산서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1호 진원리 오층석탑,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12호 장성 진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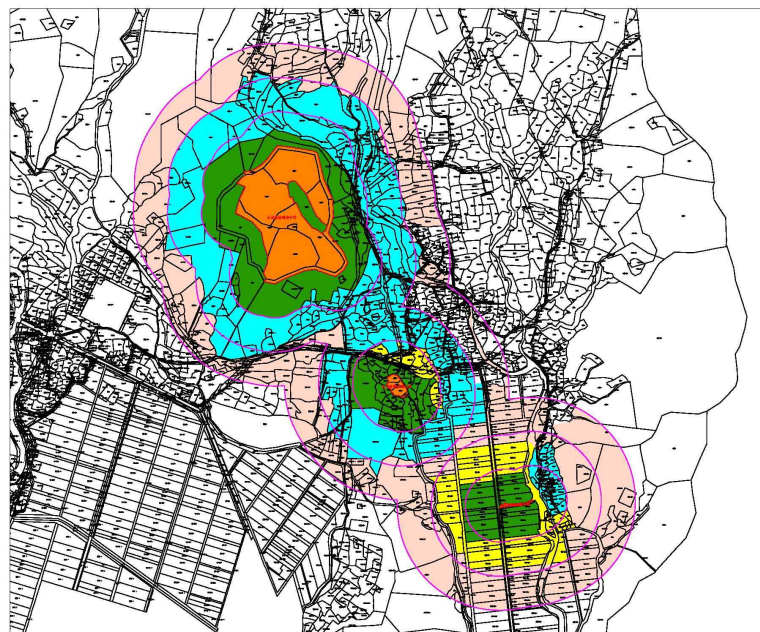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252외,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109-12,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97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응)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고산서원, 진원리 오층석탑, 장성 진원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 고산서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1호 진원리 오층석탑,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12호 장성 진원성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252외,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109-12,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97외)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응)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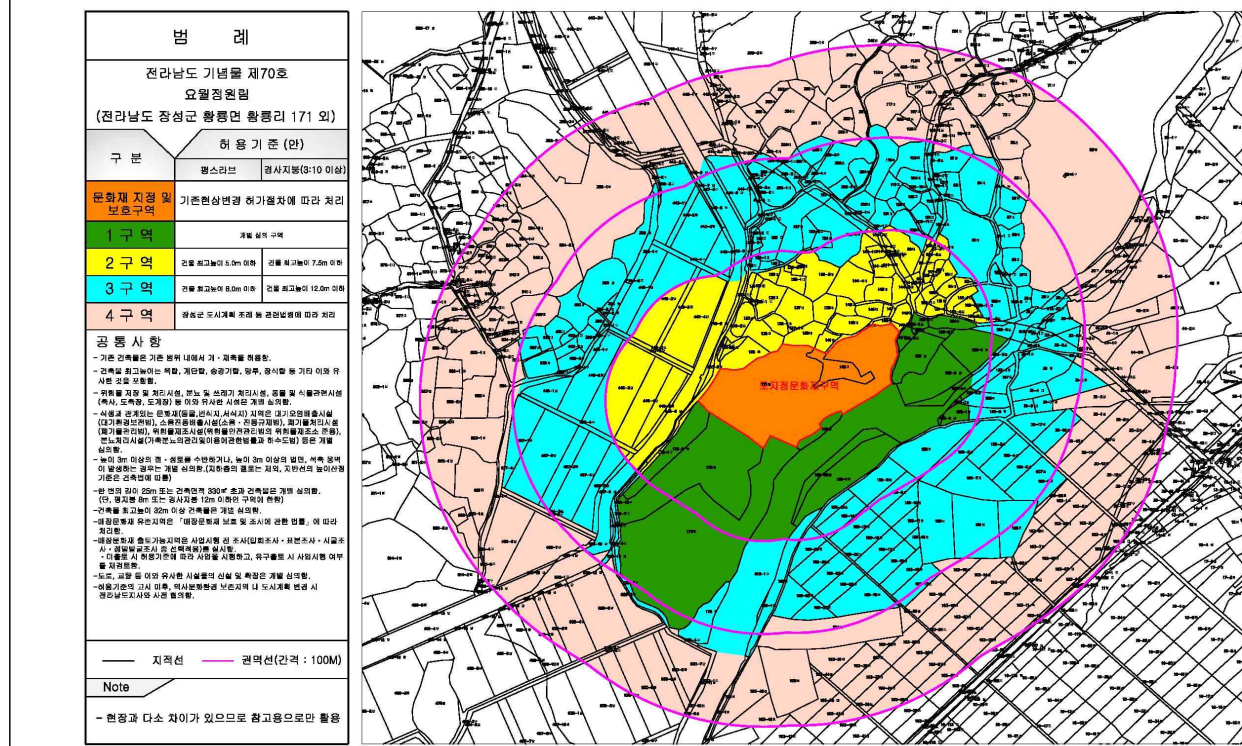
□ 전라남도 기념물 제70호 요월정원림

○ 소재지 : 황룡면 황룡리 171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취급(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요월정원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에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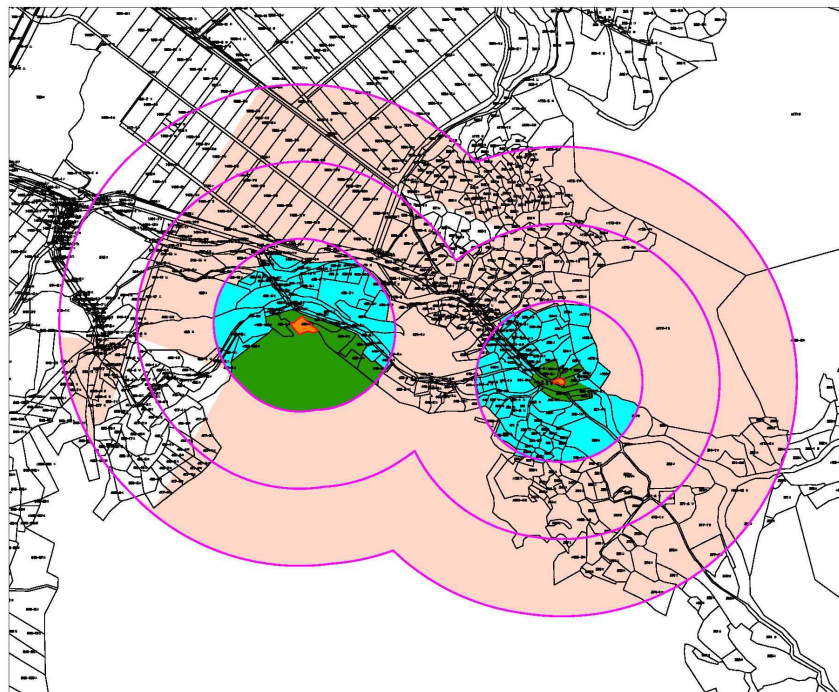


- 전라남도 기념물 제241호 장성 고경명 신도비, 전라남도 기념물 제186호 장성 영천리 방울샘
○ 소 재 지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30-2,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15-3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고경명 신도비, 장성 영천리 방울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기념물 제241호 장성 고경명 신도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30-2) 전라남도 기념물 제186호 장성 영천리 방울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15-3 외)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존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사항없음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간격: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기념물 제78호 조영규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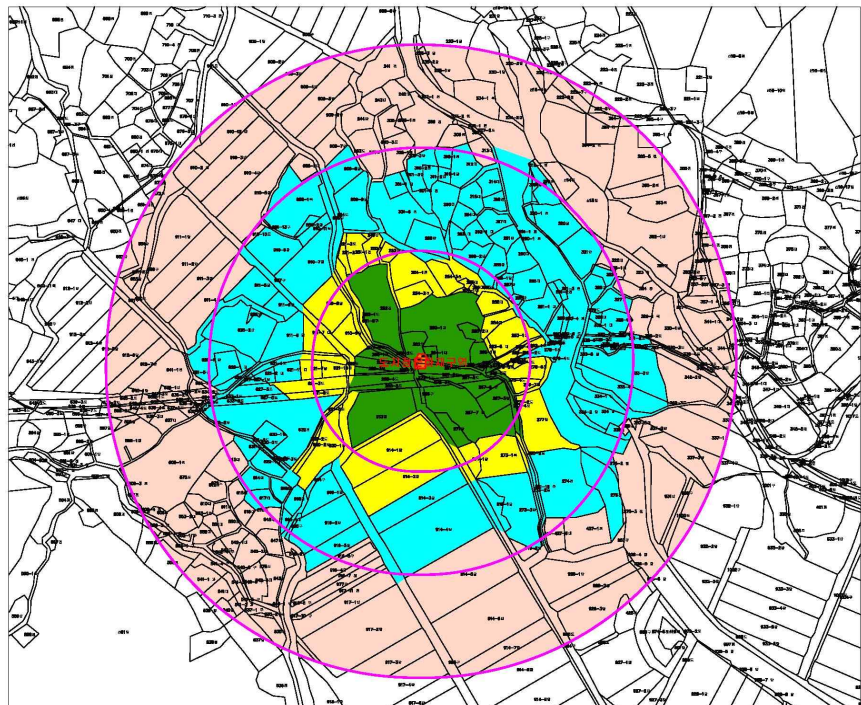
○ 소 재 지 :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63, 267-8, 880-9, 881-17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공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조영규정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기념물 제78호 조영규정령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263, 267-8, 880-9, 881-17)	
구 분	허 용 기 준 (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공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척선 ————— 권역선(반경 : 100M) Note - 원경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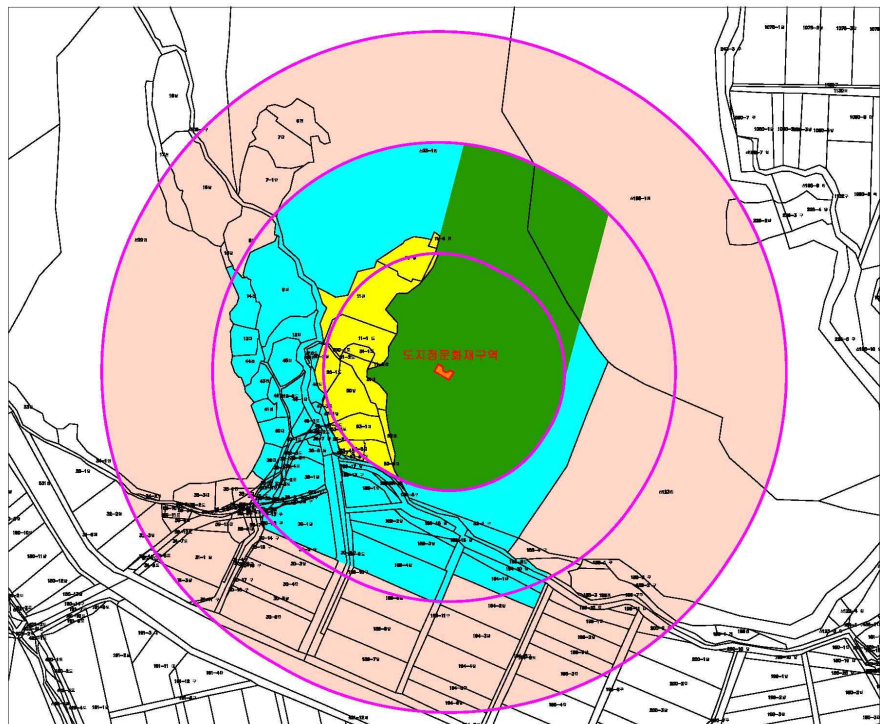


- 전라남도 기념물 제198호 장성 박수량 백비
- 소 재 지 :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산33-1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박수량 백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기념물 제198호 장성 박수량 백비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산33-1)	
구 분	허 용 기 준 (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존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간격: 100M) Note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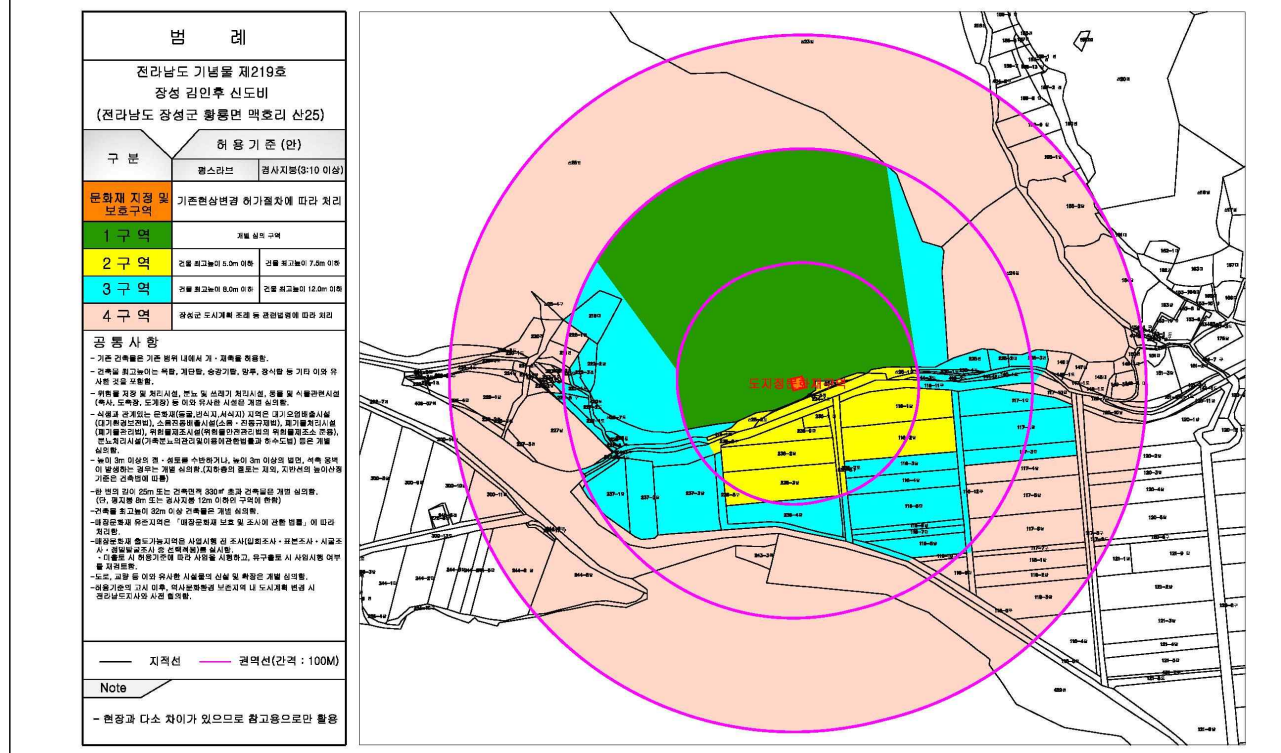
□ 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장성 김인후 신도비

○ 소 재 지 :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김인후 신도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2호 장성 이진환가옥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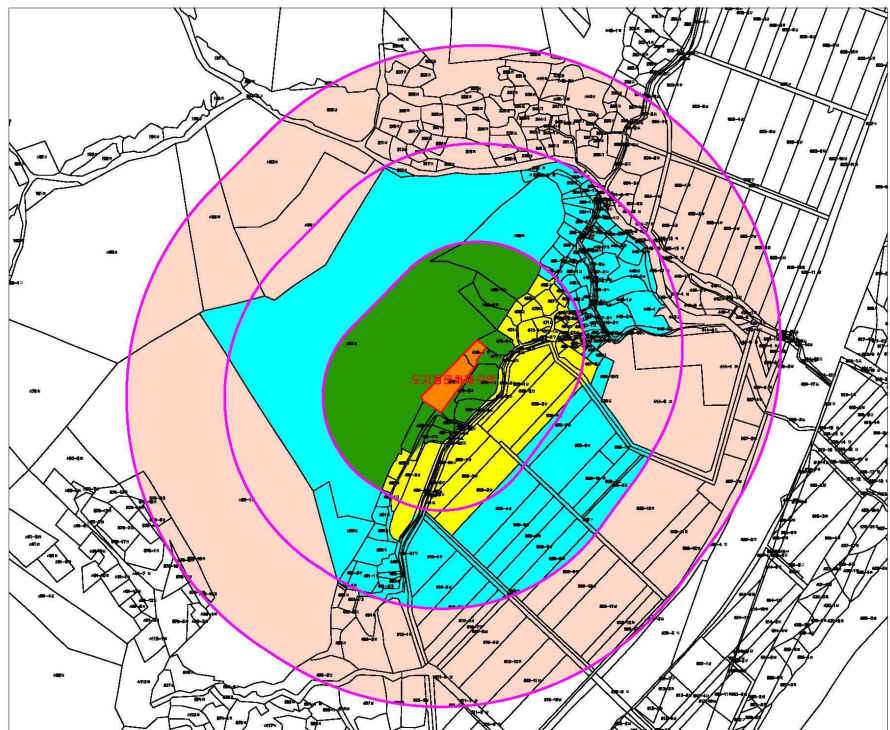
○ 소 재 지 :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478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이진환가옥 사랑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2호 장성 이진환가옥 사랑채 (전라남도 중성군 장성읍 백계리 478)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존구역	평지붕(3:10 이하)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간격: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칠현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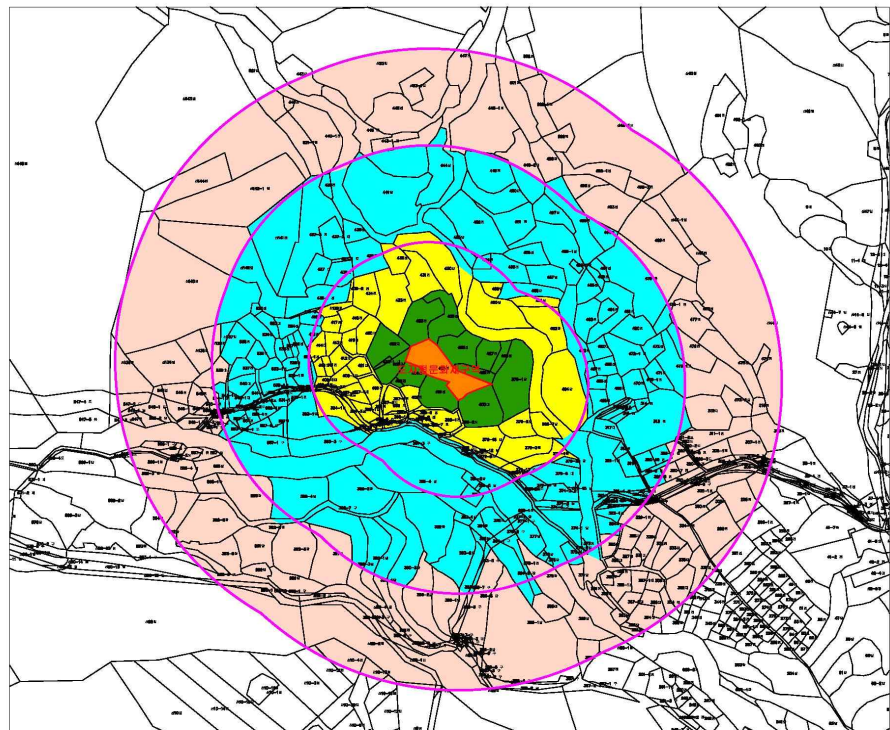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24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칠현유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칠현유적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24)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 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 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 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척선 ————— 권역선(반경: 100M) Note -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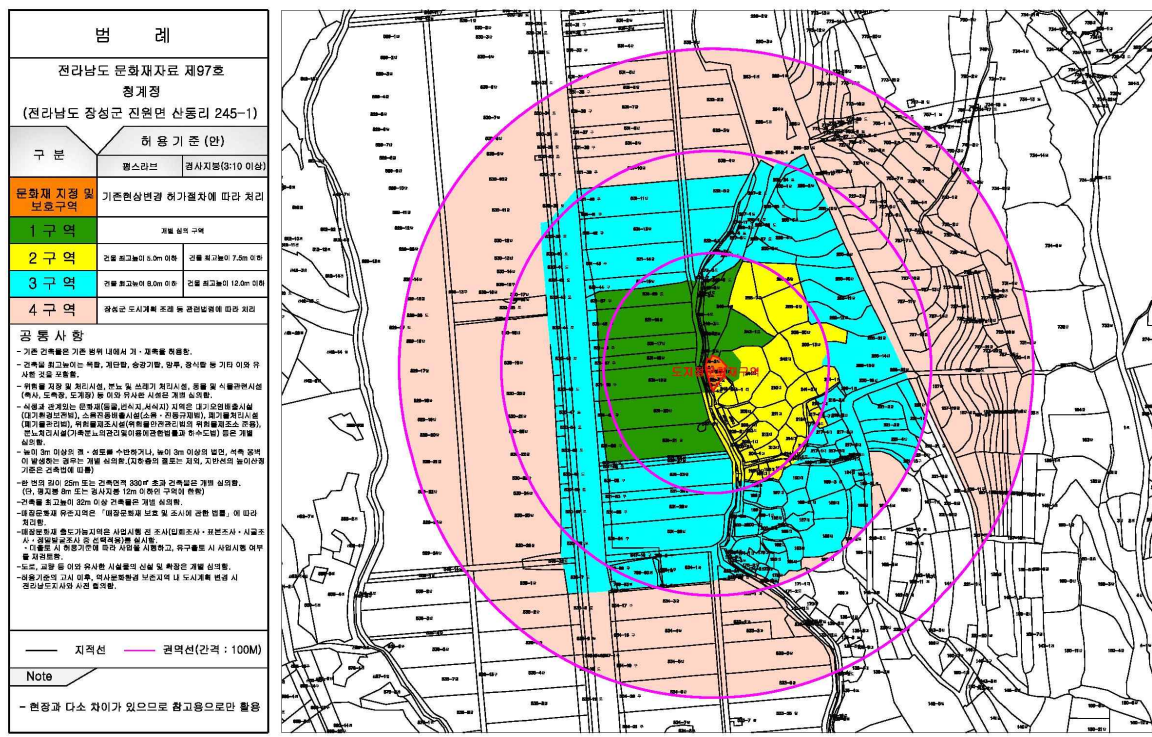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97호 청계정

○ 소재지 :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245-1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청계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98호 만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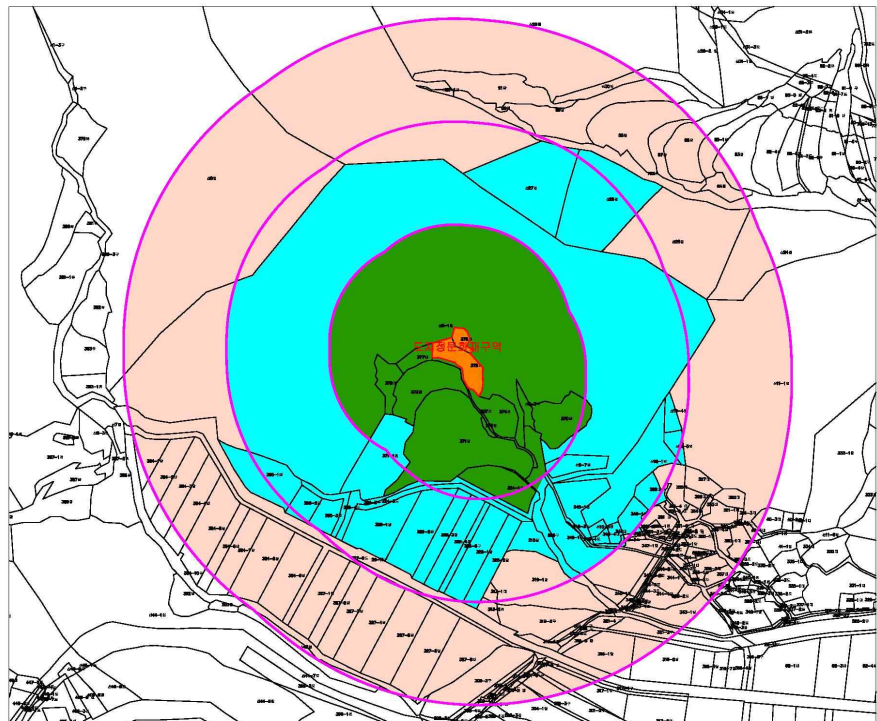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75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만곡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98호 만곡사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75 외)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평소리부 경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사항없음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간격 : 100M) Note -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8호 금성나씨삼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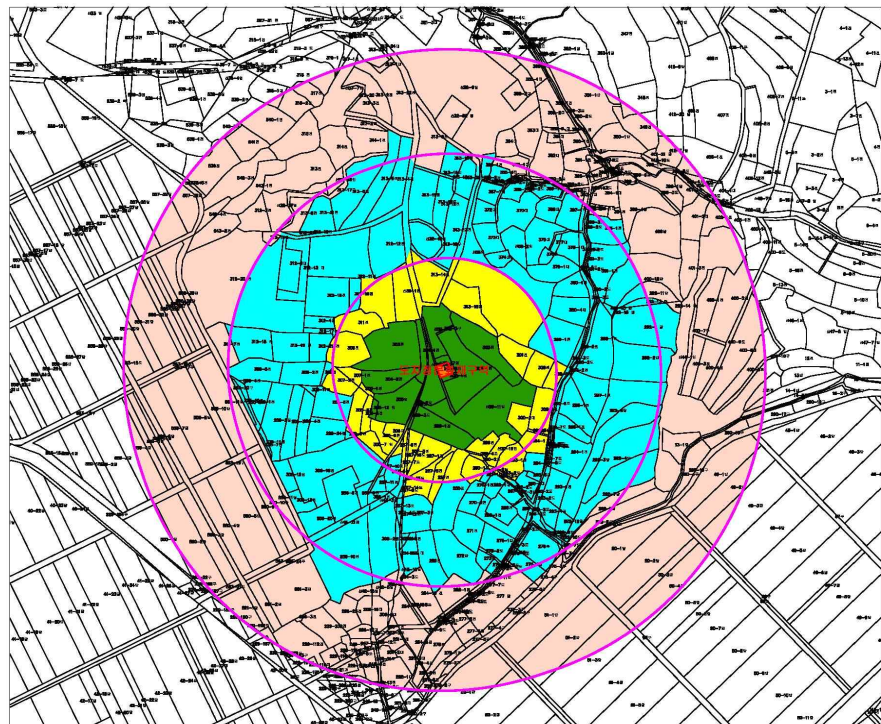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259-2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금성나씨삼강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8호 금성나씨삼강문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259-2)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존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지붕, 벽, 기·재축
2 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반경: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장성 김인후 난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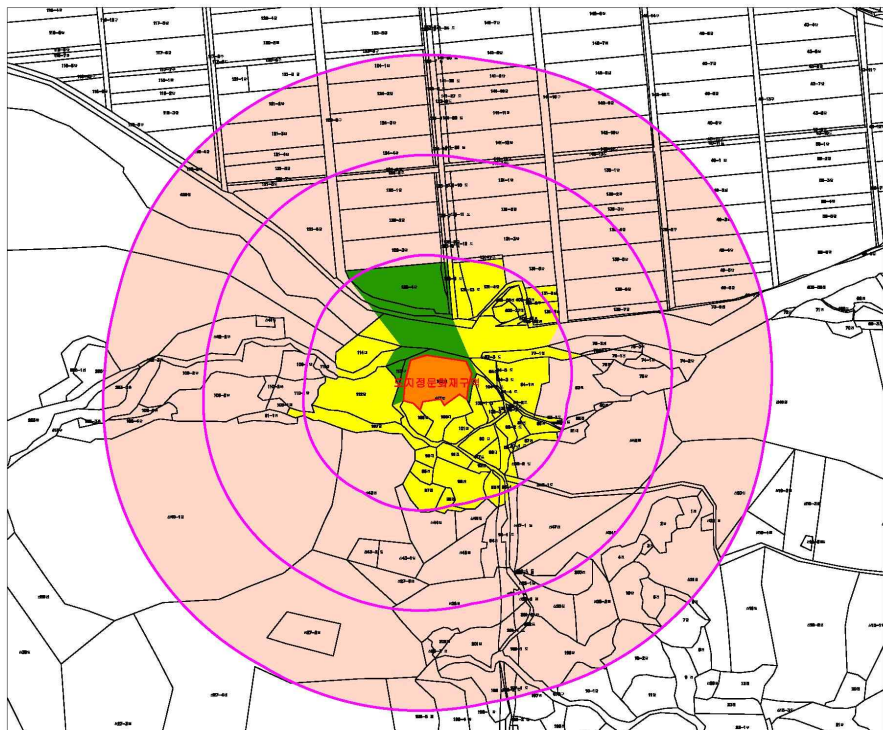
○ 소재지 : 황룡면 맥호리 산25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해당사항없음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김인후 난산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장성 김인후 난산비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	
구 분	허 용 기 준 (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역	해당 사항 없음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간격: 100M) Note - 원형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3호 수산리오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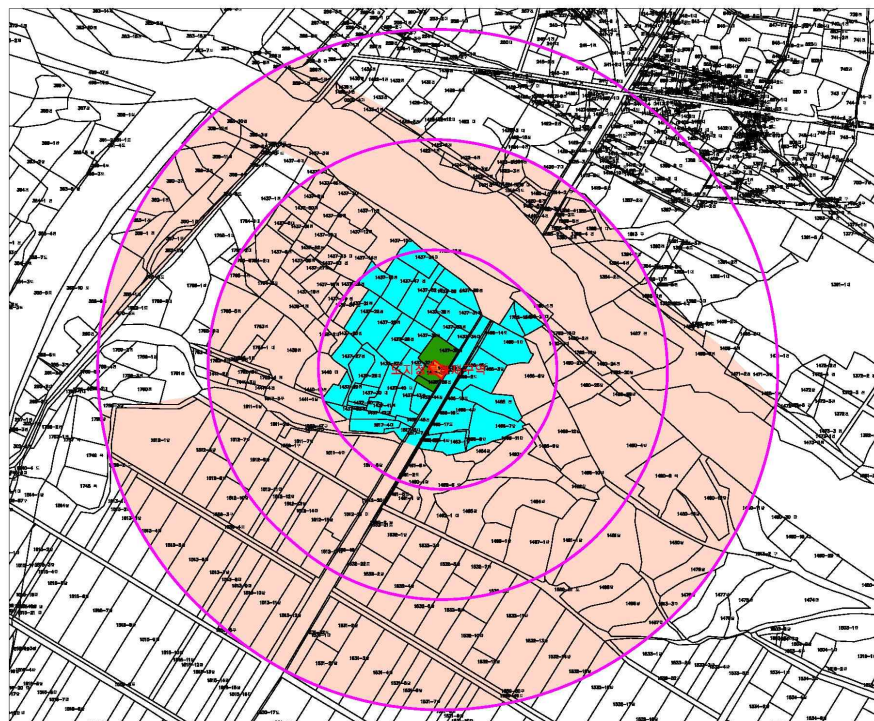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서군 장성읍 유당리 1437-39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수산리오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3호 수산리오층석탑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당리 1437-39)		
구 분	허 용 기 준 (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존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사항없음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역선 —— 권역선(간격: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9호 청류암 관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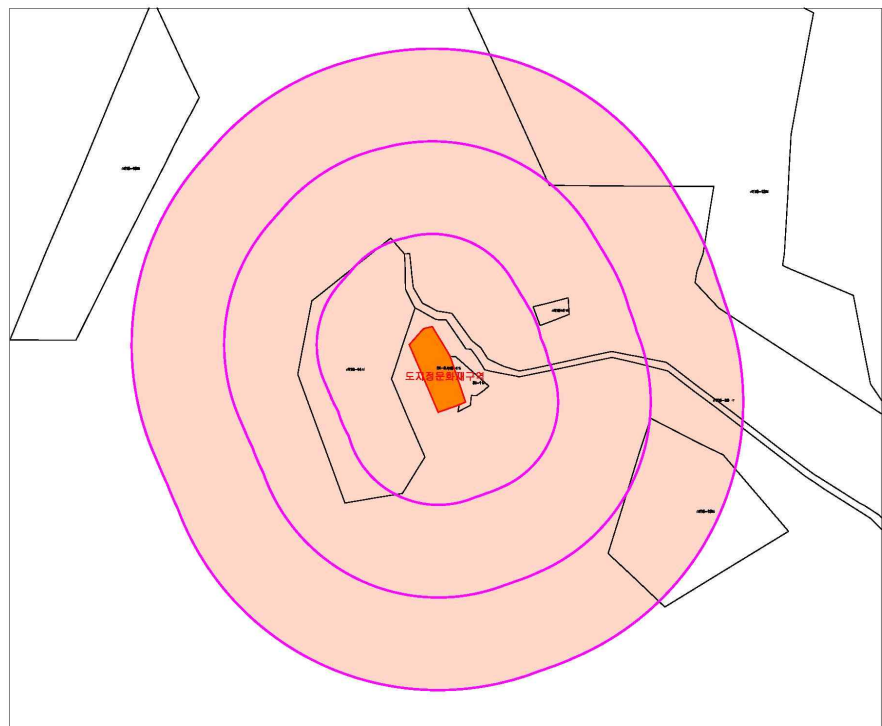
○ 소 재 지 :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1-2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해당사항없음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출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청류암 관음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문화재자료 제179호 청류암 관음전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1-2)	
구 분	허 용 기 준 (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 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 역	해당 사항 없음
3 구 역	해당 사항 없음
4 구 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출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척선 ————— 권역선(간격: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8호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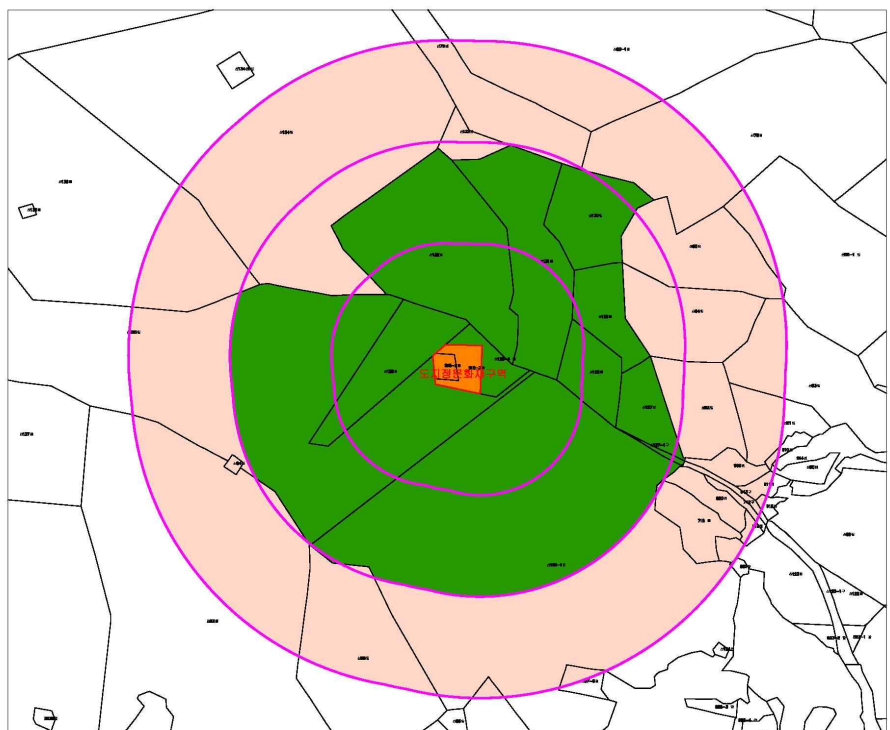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515-2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해당사항없음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문화재자료 제208호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515-2외)	
구 분	허 용 기 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 사항 없음
3 구역	해당 사항 없음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지척선 권역선(반경: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8호 장성 영천리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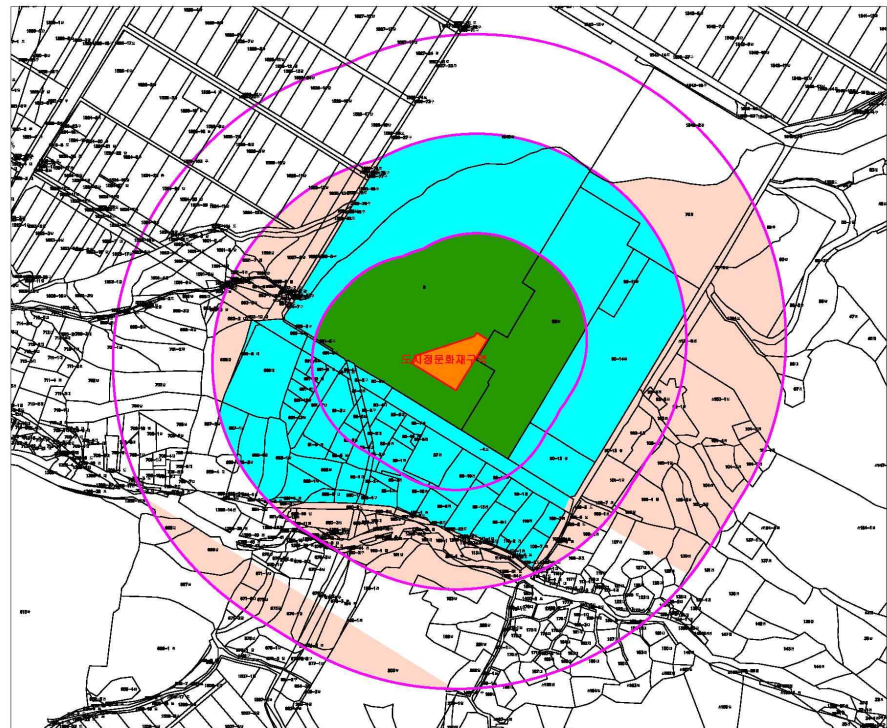
○ 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0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영천리 고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문화재자료 제228호 장성 영천리 고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0)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사항없음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4 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력선 ————— 권역선(간격 :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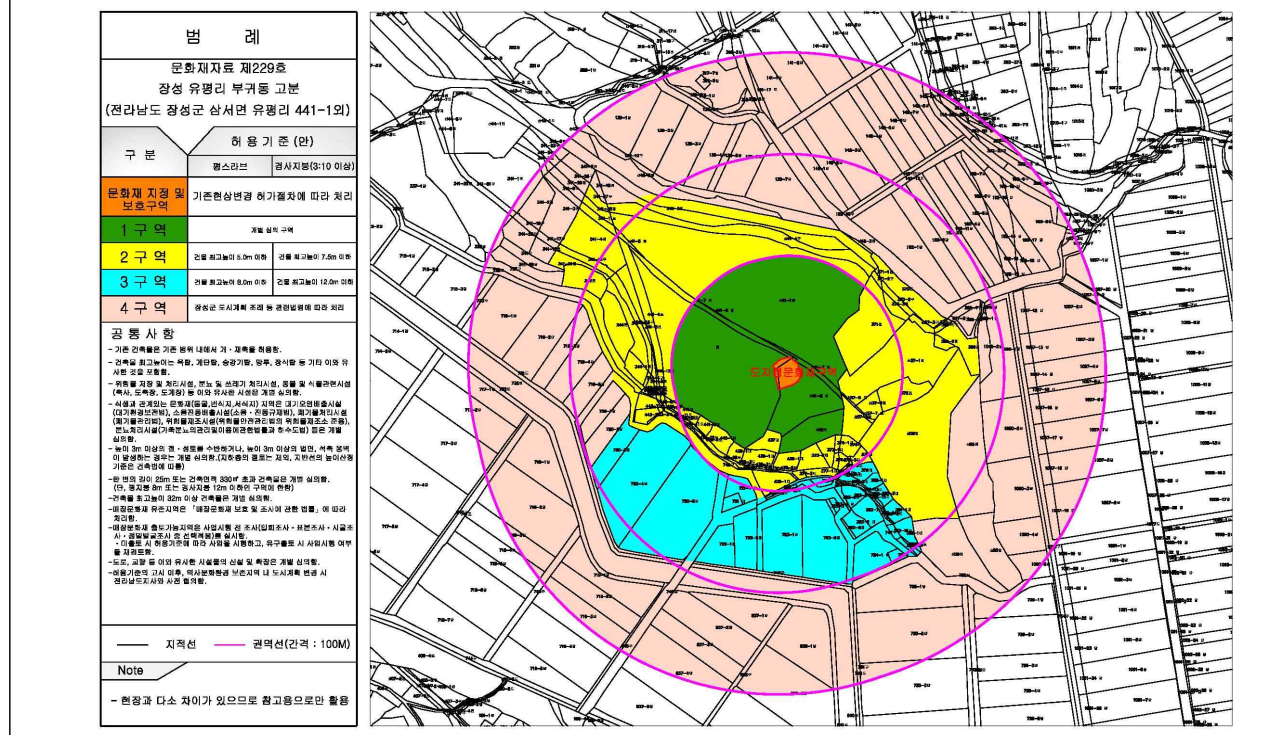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9호 장성 유평리 부귀동 고분

○ 소재지 :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441-1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장성 유평리 부귀동 고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전라남도 고시 제2016-348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함평군 소재 ‘함평향교 등 7건’

연번	지정 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비 고
1	유형문화재 제113호	함평향교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90-1 외	
2	기념물 제8호	팔열부정각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55-1	
3	기념물 제55호	함평 예덕리 고분군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170-2 외	
4	기념물 제143호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군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177 외	
5	문화재자료 176호	함평척화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06-7	
6	기념물 제158호	함평 용월리 지석묘군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367-2	
7	문화재자료 168호	영파정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04-3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74조
-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 제37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다음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확인처

-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문화예술과 자료실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6년 9월 22일(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
- 연락처 : 전화 (061)286-5452

나.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체육관광과

- 주 소 : (우)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연락처 : 전화 (061)320~324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함평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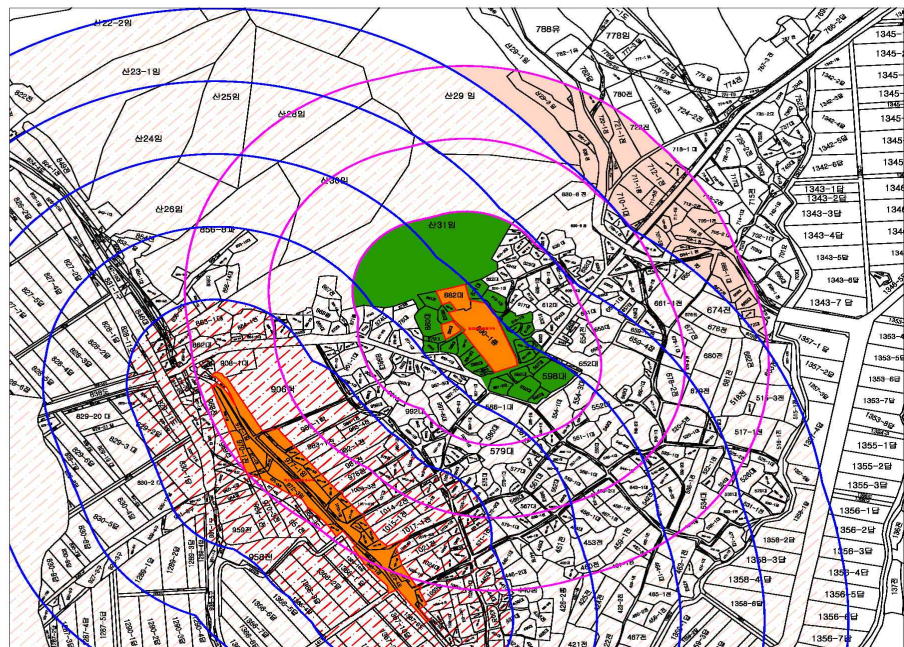
○ 소재지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90-1 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해당사항없음	
4구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함평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함평향교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90-1 외)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평지붕 평사지붕(3:10 이상)
1 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2 구역	개별 심의 구역
3 구역	해당사항없음
4 구역	해당사항없음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역선 —— 권역선(간격 : 100M) Note - 현경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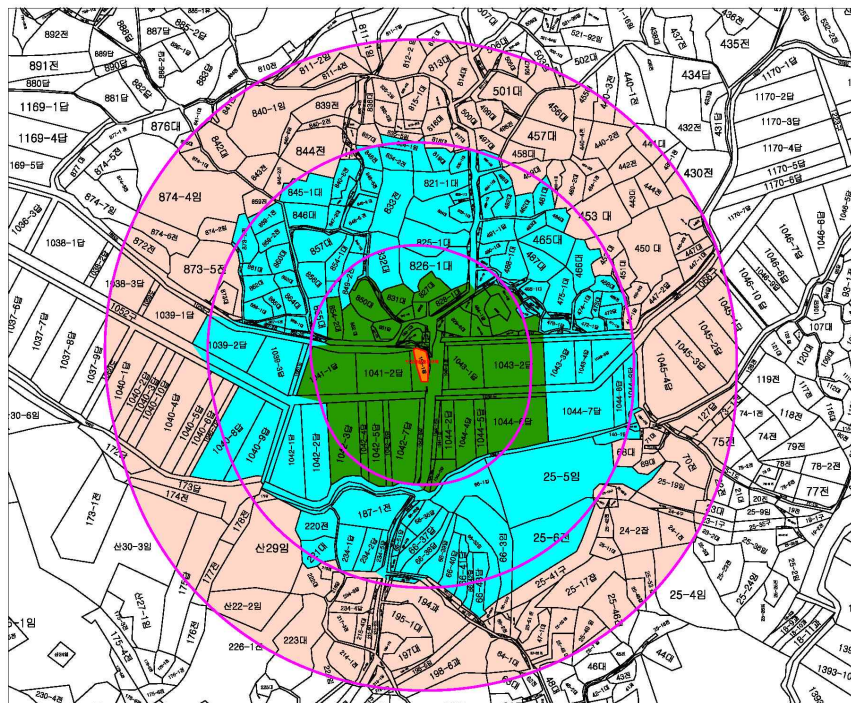


- 전라남도 기념물 제8호 팔열부정각
- 소재지 : 월야면 월야리 155-1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합평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팔열부정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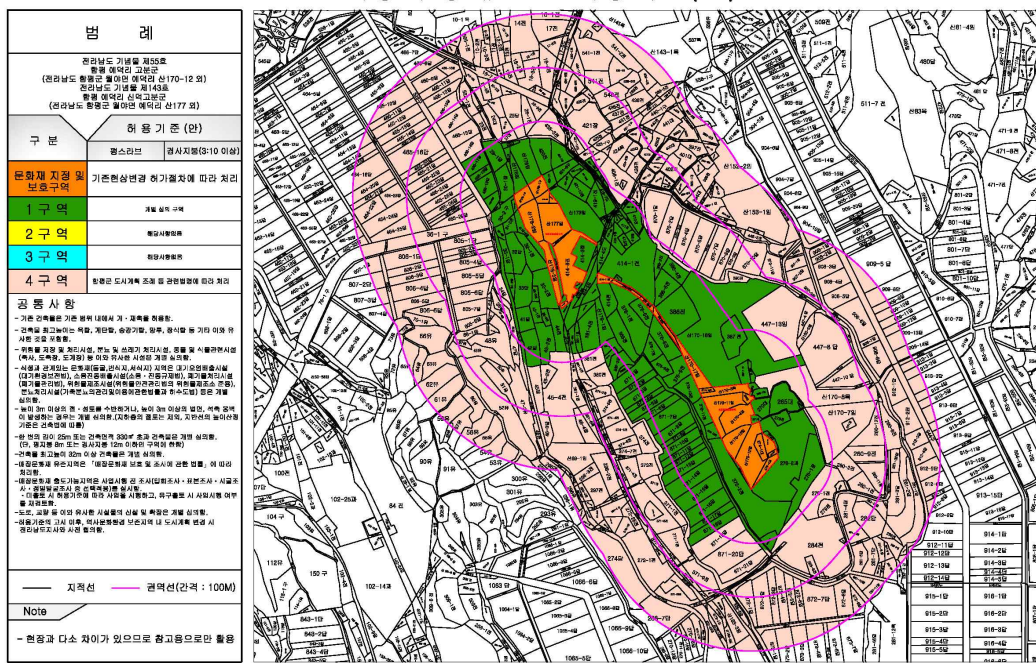
범 례	
전라남도 기념물 제8호 팔열부정각 (전라남도 합평군 월야면 월야리 155-1)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및 보존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 구역	개별 심의 구역
2 구역	해당사항없음
3 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합평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반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적선 — 권역선(간격: 100M) Note -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전라남도 기념물 제55호 함평 예덕리 고분군, 전라남도 기념물 제143호 함평 예덕리 신덕 고분군
- 소 재 지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170-12 외,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177 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해당사항없음	
4구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건물 최고높이 15.0m 이하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점·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자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새(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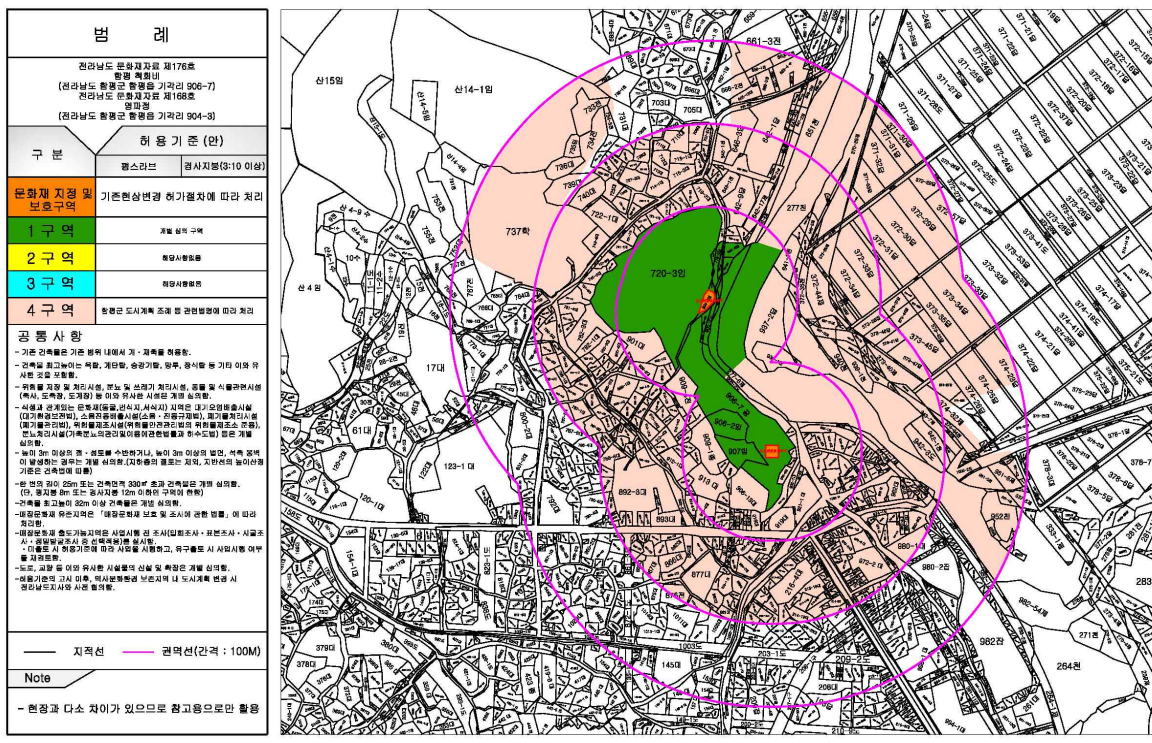
함평 예덕리 고분군,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6호 함평 척화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8호 영파정
- 소 재 지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06-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04-3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해당사항없음	
4구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사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함평 척화비, 영파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전라남도 기념물 제158호 함평 용월리 지석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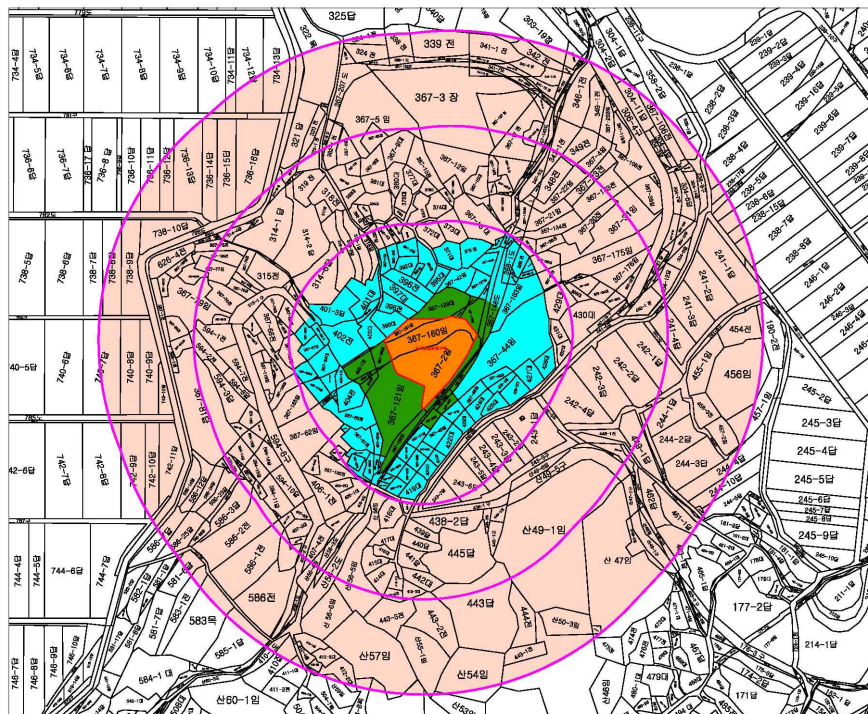
○ 소재지 : 월야면 용월리 367-2 외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반식지·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함평 용월리 지석묘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범 례	
전라남도 기념물 제158호 함평 용월리 지석묘군 (전라남도 월야면 용월리 367-2 외)	
구 분	허 용 기 준 (안)
문화재 지정 분류구역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해당사항없음
3구역	건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반식지·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화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지석선 — 권역선(간격 : 100M) Note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2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 양 광 발전사업 (전남 제3434호)	업 체 명		(주)럭스솔라
	발전소명	가좌 미래태양광발전소	럭스솔라호
	대 표 자	김 철 식	박 지 흥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20, 109동 1503호	경북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길 19-14
	설치장소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854-1	
	설비용량	1,386kW	
	허가일자	2014년 9월 19일	
	양 수 예 정 일	2016년 9월 22양도양수 계약 : ' 16. 09. 02.)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 양 광 발전사업 (전남 제4253호)	업 체 명	주식회사 에스지이투이	
	발전소명	동우4호 태양광발전소	우정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박 태 수	안 정 묵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산로7번길 15, 2층 (남산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137번길 39, 103동 304호
	설치장소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신97-4, 신97-5, 1489, 1491, 1492	
	설비용량	2,995.1kW	
	허가일자	2016년 3월 31일	
	양 수 예 정 일	2016년 9월 19일 양도양수 계약 : ' 16. 08. 10.)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5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양도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양도신고를 수리하였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구 분	양 도 업 체	양 수 업 체
상 호	주식회사 디앤아이산업	주식회사 거호종합건설
대 표 자	문기승	문기승
소 재 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48-8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48-8
납입 자본금	128억원	146억원
기 술 자	13명	13명
법인등록번호	200111-0074313	205411-0026941
사업자등록번호	409-81-37912	883-87-00347
양도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1572)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6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150818)	가온건설 주식회사 (김 화 영)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1길 12, 2층	2016. 9. 13.

전라남도 공고 제2016-849호

제30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30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연번	조 례 안 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임재한(286-3357)
2	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소방행정과 서승호(280-2263)
3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무통계담당관실 박한석(286-2622)
4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무통계담당관실 강재훈(286-2652)
5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심정식(286-3561)
6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박람회조직위 류근희(339-9209)
7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김민수(286-3832)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의료업무등의”를 “의료업무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1]의”를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인”으로,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3]의”를 “별표 3의”로 한다.

제3조 중 “별표9의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의한”을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으로, “별표4와”를 “별표 4와”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문화·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수당 지급액	월 609,000원 이하	월 518,000원 이하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근무연수별 등급별	5급	6급
	5급	6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직 급 별		지 급 액
일반직공무원	의 사	월 1,012,000원 이하
	간 호 사	월 65,000원 이하
	5 급 이상	월 82,000원 이하
	6급 및 7급	월 65,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8급 및 9급	월 30,000원 이하

[별표 4] (신설 2004. 11. 8.)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수당 지급액	월 950,000원	월 890,000원	월 720,000원	월 550,000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5]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시·군별	지역 및 등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벽 지 지 역	여수시			남면 화태리	화정면 백아리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외서면 도신리	송광면 이읍리, 외서면 화전리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금사리, 금산면 오천리	영남면 양사리, 금산면 신평리
	화순군				한천면 동가리, 이서면 야사리, 북면 이천리, 동면 장동리
도 서 지 역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손죽리	화정면 낭도리·제도리· 여자리·적금리·하화 리·월호리, 남면 연도리, 삼산면 서도리·동도리· 거문리	남면 안도리·우학리·유 송리·두라리·황간리, 화정면 개도리, 돌산을 군 내리	경호동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봉래면 사양리, 도양읍 사산리, 금산면 신전리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낙월면 송이리· 상낙월리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노화읍 내리, 금당면 차우리	노화읍 이포리, 청산면 도 청리, 금일읍 화목리, 소안 면 비지리, 보길면 부항리, 생일면 유서리	고금면 농상리, 약산면 장용리
	진도군	조도면 동가차도리·서거 차도리·관매도리·가사 도리	조도면 대미도리·관사도 리	조도면 창유리·여미리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수리·장 도리·영산도리·다물도 리·만재도리·가거도 리·홍도리, 비금면 수치도리, 도초면 우이도리, 하의면 능산도리·옥도리, 장산면 마진도리, 안좌면 반월리	흑산면 예리·진리·사리, 안좌면 자라리, 압해읍 고이리·가란리·매화리, 지도읍 선도리· 어의도리, 임태면 수곡리·당사리, 임자면 재원리, 하의면 웅곡리, 신의면 상태동리, 장산면 도창리·대리	중도면 병풍리, 자은면 구영리, 비금면 덕 산리, 도초면 수항리	임자면 대가리· 진리, 안좌면 읍동리, 임태면 단고리, 팔금면 읍리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	수당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용 및 지도·감독
 - 나.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관사무
 - 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 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 등을 말한다.
3. “소방관련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소방기본법」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 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 하고, 특별회계의 사무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및 「전라남도 도세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다)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다)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모든 인력운영비를 포함한다)

5.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설치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3.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비(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6. 「지방재정법」 제29조,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 1. 1. 시행한다.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를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로, “사항과「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 을 “사항”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입법“이라 함은” 을 ““입법“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법 예고“라 함은” 을 ““입법예고“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비용추계서“라 함은” 을 ““비용추계서“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세출“이라 함은” 을 ““세출“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세입“이라 함은” 을 ““세입“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 를 “하지 아니” 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기간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6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한 예고할 자치법규안의 전문(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 시)
6. 그 밖에 입법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 중 “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입법안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 하는 등 도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일간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결과를” 을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작성방법 등)” 을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 를 “정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 을 “ 「행정규제기본법」 ” 으로 하고, “관한” 을 “관하여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립·시행” 을 “수립 및 시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등에 대한” 을 “등의”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하되” 를 “구성하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가 되며” 를 “행정부지사로 하되” 로, “중에서” 를 “중” 으로, “가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를 “의 위촉으로 공동위원장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 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임기” 를 “위원의 임기”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회의일시” 를 “회의 일시” 로, “3일전” 을 “3일 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익등” 을 “공익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과장포함” 을 “실·과장을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표자등 으” 를 “대표자 등으” 로, “출석하여” 를 “출석.” 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직접 이해관계” 를 “이해관계” 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들”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이 된다” 를 “과장으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담부서를 중심으로”를 “전담부서와”로,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사업 담당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로,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을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지원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전라남도 자체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행정지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명칭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로 한다.

제2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로 본다.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지원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라남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1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 일반 현황

업종	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	비고
일반측량업	04-003661	나노측량기술	김영철	전남 광양시 불무길 12	2016. 9. 13.	

☐ 장비 현황

구분	보유현황	등급
보유장비	○ 데오드라이트 : 규격 T2 기기번호 : 354168	1급
	○ 레벨 : 규격 NA28 기기번호 : 739622	3급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2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 등록사항 공고내용

구분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범위	등록일자
전문설계업 1종	제 전문1-7호	유한회사 믿음이엔지 (김용주)	전남 순천시 해룡면 동명초등길 35-29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계도서작성	* 16.09.13.
전문 감리업	제 전문-10호	유한회사 믿음이엔지 (김용주)	전남 순천시 해룡면 동명초등길 35-29	발전·변전설비 용량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전 ·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 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 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전력시 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16.09.13.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고)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 및 양도(분할합병)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현황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610256)	주식회사 그리드텍	정진업	전남 나주시 맞가람로 809 301호,302호	2016.9.12.	
정보통신공사업 (610257)	주식회사 태 화	정진구	전남 나주시 등대길 25,2층 (이창동)	2016.9.12	
정보통신공사업 (610258)	시그탈테크 주식회사	심성욱	전남 담양군 월산면 장재길 139	2016.9.12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현황

구 분	상 호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합병 대상법인	주식회사 대오	조계환	정보통신공사업 (제140223)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64-5
	주식회사 대오	조계환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문로 8,2층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대오	조계환	정보통신공사업 (제140223)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문로 8,2층

☐ 양도(분할합병) 수리일 : 2016. 9. 12.

전라남도 공고 제2016-8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인 공사업체에 대하여 처분사 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지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정보화담당관 -
시행일 2016. 9.
수신 (유)로이콤 박정민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2. 당사자	성명(상호)	박정민 (유)로이콤				
	주 소	(5776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예구길 1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 기술자 2명 부족 : 초급 2(보완기한 : ' 16.6.9.)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1개월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제1항(처분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처분기준) 가. 등록기준 미 유지 시(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영업정지 3월) 다. 나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등록취소)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정 보 화 담당관실	담당자	김동진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화번호	061) 286-2753
	일 시	2016년 10월 20일(목) 14:00				
	장 소	전라남도 청문장(행정동 12층, 법무통계담당관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성 명		오형근				

전라남도지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안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정보화담당관실(☎ 061-286-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대리 참석시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16. 10. 4.(화) 18:00까지
- 제 출 처 : 전라남도 정보화담당관실
- 제출방법
 - 서 면(FAX) : 061-286-4741
 - 전 화(구술) : 061-286-2753
 - 우편접수 : 2016. 10. 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6-5호

기초자치단체의원의 재산등록사항(수시신고) 및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4조의4제5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원의 재산등록사항(수시신고) 및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 9. 22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 붙임 : 1.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수시신고) 공개목록 1부
2. 공직자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목록 1부.

소속	전라남도 여수시		직위	(전)의원	성명	노순기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83,582	0	0	183,582	
본인	임야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산 342번지 19,140.00㎡	13,780	0	0	13,780	
본인	임야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67-1번지 549.00㎡	631	0	0	631	
본인	임야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87-9번지 9,775.00㎡	9,159	0	0	9,159	
본인	임야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산 339번지 25,197.00㎡	12,270	0	0	12,270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87-23번지 297.00㎡	1,229	0	0	1,229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87-1번지 4,804.00㎡	19,888	0	0	19,888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87-14번지 2,162.00㎡	8,756	0	0	8,756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03번지 249.00㎡	1,030	0	0	1,030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05번지 155.00㎡	620	0	0	620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09번지 843.00㎡	3,414	0	0	3,414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10번지 3,083.00㎡	13,873	0	0	13,873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26번지 1,722.00㎡	7,766	0	0	7,766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8번지 1,474.00㎡	6,633	0	0	6,633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9번지 1,990.00㎡	8,955	0	0	8,955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1번지 301.00㎡	1,231	0	0	1,231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2번지 694.00㎡	3,157	0	0	3,157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3번지 645.00㎡	2,638	0	0	2,638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4번지 605.00㎡	2,474	0	0	2,474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6번지 446.00㎡	2,029	0	0	2,029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7번지 237.00㎡	1,078	0	0	1,078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8번지 758.00㎡	3,486	0	0	3,486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9번지 356.00㎡	1,619	0	0	1,619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00번지 192.00㎡	873	0	0	873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01번지 268.00㎡	1,096	0	0	1,096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476번지 645.00㎡	2,902	0	0	2,902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483번지 212.00㎡	954	0	0	954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298-2번지 53.00㎡	243	0	0	243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63번지 3,891.00㎡	17,509	0	0	17,509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69번지 654.00㎡	2,943	0	0	2,943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2번지 536.00㎡	2,412	0	0	2,412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2-1번지 142.00㎡	639	0	0	639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5번지 1,064.00㎡	4,788	0	0	4,788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5-1번지 416.00㎡	1,872	0	0	1,872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6번지 694.00㎡	3,123	0	0	3,123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197번지 1,154.00㎡	5,193	0	0	5,193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12번지 1,018.00㎡	4,682	0	0	4,682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13번지 331.00㎡	1,400	0	0	1,400	
본인	대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29번지 264.00㎡	1,927	0	0	1,927	
본인	대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30번지 645.00㎡	4,708	0	0	4,708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312-2번지 131.00㎡	602	0	0	602	
▶ 건물(소계)			172,000	0	0	172,000	
배우자	아파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단지 건물 134.74㎡	142,000	0	0	142,000	
차남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아이타운 건물 81.24㎡ 중 20.31㎡	30,000	0	0	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47,200	0	0	1,047,20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베라크루즈 배기량(2,959cc)	21,500	-	-	21,500	
본인	어업권	서남해구외끌이기선자인망 전남 여수시 신월동 금호apt 2011.11.07~2012.11.06	1,000,000	-	-	1,000,000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에쿠스 배기량(3,800cc)	25,700	-	-	25,700	
▶ 예금(소계)			335,760	47,735	125,126	258,369	
본인		현대해상화재보험 1,895(177 증가), 농협생명보험 0(13 감소), 구봉 491(431 증가), 여수중부 11,048(11,041 증가), 우체국 28,208(1,327 증가), (주)KB손해보험 16,551(797 증가), 수협 72,871(97,127 감소), AIA생명보험 22,305(1,486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800, 국민은행 399(16 증가), 농협중앙회 1,242(411 증가), 광주은행 0(502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19,951(1,494 증가), 동부생명보험 330	260,553	29,131	109,593	180,091	예금 및 보험등 해약으로 예금액 감소
배우자		국민은행 468(334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597(298 증가), 하나은행 629(629 증가), 우체국 13,383(302 증가), 농협중앙회 128(225 감소), 삼성생명보험 8,600(1,200 증가), (주)KB손해보험 606(453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3,270(780 증가), 신한생명보험 12,078(751 증가), 수협 5,064(997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345(173 증가)	62,138	9,650	6,620	65,168	
손녀1		농협중앙회 92(92 증가), 중소기업은행 180(180 증가)	0	272	0	272	
손녀2		중소기업은행 160(160 증가), 농협중앙회 51(51 증가)	0	211	0	211	
차남		농협은행 40(20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2,587(455 증가), 진해복음신협 0(20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781(379 증가), 악사(AXA)손해보험 592(85 증가), 우체국 109, 하나은행 0(115 감소), 농협중앙회 0(23 감소), 하나대투증권 7,318(6,799 증가)	3,887	7,758	218	11,427	
장녀		국민은행 1,073(4,950 감소), 농협은행 113(77 증가), 우체국 14(3,109 감소)	9,182	713	8,695	1,200	

▶ 유가증권(소계)			10,546	1,007	636	10,917	
차남	상장주식	라운시큐어 398주, 일신바이오 137주(137주 증가), 데코앤이 600주, 셀루메드 65주, 라이브플렉스 500주, MPK 150주(150주 감소), 큐로컴 816주, 솔고바이오 3,255주	10,546	750	636	10,660	주식매입
장녀	상장주식	큐로컴 62주(62주 증가), 미래산업 6주(6주 증가)	0	257	0	257	
▶ 채무(소계)			656,741	347,585	295,741	708,585	
본인	금융기관채무	수협 632,587(36,587 증가)	596,000	271,587	235,000	632,587	어업자금 추가대출
차남	금융기관채무	롯데카드 0(2,302 감소), 농협은행 72,998(72,998 증가),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0(8,000 감소), 이주캐피탈 0(23,596 감소), 하나은행 0(14,312 감소), 삼성카드 0(3,601 감소), 신한카드 0(8,930 감소)	60,741	72,998	60,741	72,998	가계비 추가대출
장녀	금융기관채무	KB국민카드 3,000(3,000 증가)	0	3,000	0	3,000	가계비대출
▶ 회원권(소계)			0	38,400	0	38,400	
배우자	골프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 증가	0	38,400	0	38,400	골프회원권 매입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092,347	-260,443	-169,979	1,001,883	증감액: -90,464천원 (가액변동: 276천원)

소속	전라남도 장성군		직위	의원		성 명	김옥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세운메디칼	13,250	매각	62,275	2016.6.29.	대신증권	

목포시 고시 제2016-16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2-6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석현동 1031-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2-614호선)사업 【사업명 : 석현동 광야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지장물조서 변경(추가)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22

목포시장

■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위치 : 목포시 석현동 1031-12번지 일원(기톨릭대 뒤)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2-614호선)사업 ○ 사 업 명 : 목포 석현동 광야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105m, B=8m, A=947㎡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 ○ 성 명 : 목포시장(건설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16. 3. 17.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 세목조서	○ 지장물 조서(변경) : 다음	변경 (지장물 추가)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건설과 비치)	
8.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 - 270 - 3485(건설과)	

가. 토지조서(변경 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합 계				860	860					
1	석현	1031-20	구거	40	40	국	농림축산 식품부			
2	석현	902-2	전	357	35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48길 17-20, 103동 1802호(신림동, 건영아파트4차)	오창석	목포시 영산로 659 (석현동)	목포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3	석현	903-16	전	138	138	목포시 석현동 841-1 목포시 석현동 841-1 목포시 남악2로9번길 4-12,301호(옥암동)	서석배 서정배 장문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국민건강 보험공단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압류, 근저당, 지상권
4	석현	903-14	전	150	150	전남 목포시 석현동 784	정일향	목포시 용당동 1095-6	목포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5	석현	907-4	전	170	170	전남 목포시 용해동 973, 103동 301호 (포미타운 주공1단지)	박영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지상권
6	석현	907-3	전	5	5	공	목포시			

나. 지장물조서(변경 - 2~3추가)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 이용 상황	건축 면적 (㎡)	편입 면적 (㎡)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석현	902-2	전	콘테 이너	철판	콘테 이너	54	54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48길 17-20, 103동 1802호 (신림동,건영아파트4차)	오창석	목포시 영산로 659	목포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2	석현	903-16	전	매실 나무					3	목포시 석현동 841-1 목포시 석현동 841-1 목포시 남악2로9번길 4-12, 301호 (옥암동)	서석배 서정배 장문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국민건강보 험공단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압류, 근저당, 지상권
	석현	903-16	전	감나무					2					
	석현	903-16	전	사과 나무					1					
	석현	903-16	전	단풍 나무					1					
3	석현	907-4	전	대나무					170	목포시 용해동 973, 103동 301호 (포미타운 주공1단지)	박영삼			

나주시 고시 제2016-120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주시 청동 4번지 일원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구역계 축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6. 9. 22

나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2.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 061-339-8975) 및 경제교통과(☎ 061-339-886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변경)

가.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4	자동차정류장	공 영 차고지	나주시 청동 4번지 일원	54,351	감5,268	49,083	나주시 고시 제2016-73호 2016. 5. 26.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자동차정류장	◦ 구분 : 변경 ◦ 면적 : 54,351㎡ → 49,083㎡ (감5,268㎡)	◦ 토지수용이 불가한 행정재산인 철도청 소유토지 제척에 따라 구역계 조정

광양시 고시 제2016-162호

광양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3호)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광양시 진월면 망덕1길 33-47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3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6. 9. 22

광양시장

1.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6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3호)
 - 명 칭 : 폐기물 처리시설 내 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27,872.3㎡
 - 규 모
 - 기 정 : 건축물 3동 철거(1,224.68㎡)
 - 변 경 : 건축물 5동 신축(1,278.55㎡)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1길 33-47
 - 성 명 : (주)일성산업 대표 한선희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9. 23.
 - 준공예정일 : 2017. 3. 31.(6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연번	구분	지번	지목	필지수	공부상 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폐기물부지	865	잡	1	27,872.3	27,872.3	(주)일성산업	

7.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계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건설과 비치)
8. 인가조건 : 계재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일성산업(☎061-772-6119) 및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고 제2016-1570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람 공고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22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7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 사업

○ 명칭 :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 97,826㎡(시장 78,184㎡, 도로 13,439㎡, 공공공지 4,303㎡, 경관녹지 1,900㎡)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단지계획고	GL 16.0	GL 15.5	
중로 1-16호선 종단구배 변경	종단구배 4.4%	종단구배 5.0%	
주차장	옥외주차장 포함 1,130대	철골주차장 포함 1,340대	
가로등	-	신설 가로등 23개소 반영 국도2호선 12개소 이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주)LF 네트워크 대표이사 김유일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4. 12. 18. ~ 2017.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7.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게재생략

8. 인가조건 : 게재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계			총 159필지		145,317	97,826			당초
계			총 162필지		130,051	97,826			변경
1	광양	덕례	1187	답	1,293	56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	광양	덕례	1187	답	567	56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	광양	덕례	1588-2	구	5,712	703	국(국토교통부)		당초
2	광양	덕례	1588-2	구	703	703	국(국토교통부)		변경
3	광양	덕례	1186	답	2,992	59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	광양	덕례	1186	답	598	59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	광양	덕례	702	답	2,787	2,78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4	광양	덕례	702	답	2,787	2,78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	광양	덕례	707-2	답	1,342	1,342	임진영 외 1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39-202 극동아파트 3-610	당초
5	광양	덕례	707-2	답	1,342	1,34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	광양	덕례	703	답	2,618	2,61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6	광양	덕례	703	답	2,618	2,61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	광양	덕례	704	답	1,494	1,47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7	광양	덕례	704	답	1,494	1,47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	광양	덕례	706-1	답	3,041	1,85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	광양	덕례	706-1	답	1,854	1,85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	광양	덕례	707-3	답	1,762	1,76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9	광양	덕례	707-3	답	1,762	1,76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10	광양	덕례	705-2	답	2,873	1,44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0	광양	덕례	705-2	답	1,443	1,44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	광양	덕례	706	답	176	176	이남건 외 1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3 해운대동일아파트 102-1201	당초
11	광양	덕례	706	답	176	17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	광양	덕례	706-2	답	330	330	금경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75-1 롯데캐슬비치-3106	당초
12	광양	덕례	706-2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	광양	덕례	706-3	답	135	13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3	광양	덕례	706-3	답	135	13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	광양	덕례	706-5	답	374	37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4	광양	덕례	706-5	답	374	37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	광양	덕례	706-6	답	330	330	허연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 309동603호(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당초
15	광양	덕례	706-6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6	광양	덕례	706-7	답	330	330	성영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013-4	당초
16	광양	덕례	706-7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7	광양	덕례	706-8	답	215	215	정미남 외 1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1619 장산1차롯데낙천대아파트102-2303	당초
17	광양	덕례	706-8	답	215	21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8	광양	덕례	706-9	답	165	165	정복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11-14	당초
18	광양	덕례	706-9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9	광양	덕례	706-10	답	165	165	김만우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16-15 오가우성임대아파트-804	당초
19	광양	덕례	706-10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20	광양	덕례	706-11	답	321	321	최창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63번길46,102동301호 (중동,해운대중동롯데캐슬마스터11)	당초
20	광양	덕례	706-11	답	321	32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1	광양	덕례	706-12	답	165	165	강담희 외 1인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5로 109동 1206호(정관신동아 파밀리에)	당초
21	광양	덕례	706-12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2	광양	덕례	706-13	답	165	165	이상집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28 수영강변2차 아-편한세상 207-202	당초
22	광양	덕례	706-13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3	광양	덕례	706-14	답	231	231	김진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71번길9-9,비동402호 (우동,해운파크맨션)	당초
23	광양	덕례	706-14	답	231	23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4	광양	덕례	706-15	답	167	167	조성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경남아너스빌103-303	당초
24	광양	덕례	706-15	답	167	16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5	광양	덕례	705-1	답	2,615	1,32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25	광양	덕례	705-1	답	1,324	1,32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6	광양	덕례	743	답	1,702	1,702	LF 네트워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05 1층 아주부동산(조용한)	당초
-1	광양	덕례	743	답	851	85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	광양	덕례	743-1	답	851	85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7	광양	덕례	742	임	1,005	1,00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27	광양	덕례	742	임	1,005	1,00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28	광양	덕례	744	답	2,000	2,00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28	광양	덕례	744	답	2,000	2,00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29	광양	덕례	745	답	1,435	1,43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29	광양	덕례	745	답	1,435	1,43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0	광양	덕례	746	답	2,116	2,11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0	광양	덕례	746	답	2,116	2,11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1	광양	덕례	747	답	321	32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1	광양	덕례	747	답	321	32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2	광양	덕례	748-1	답	1,666	1,63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2	광양	덕례	748-1	답	1,632	1,63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3	광양	덕례	749-4	답	28	2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3	광양	덕례	749-4	답	28	2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4	광양	덕례	748	답	1,398	1,39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4	광양	덕례	748	답	1,398	1,39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5	광양	덕례	749	답	1,314	41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5	광양	덕례	749	답	413	41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6	광양	덕례	750	답	1,300	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36	광양	덕례	750	답	30	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37	광양	덕례	1580	도	14,541	1,695	국 (국토교통부)		당초
37	광양	덕례	1580	도	14,541	1,695	국 (국토교통부)		변경
38	광양	덕례	748-2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38	광양	덕례	748-2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39	광양	덕례	740-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당초
39	광양	덕례	740-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변경
40	광양	덕례	740	묘	132	132	윤정식 외 1인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옥지 일주로 819-87	당초
40	광양	덕례	740	묘	132	13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1	광양	덕례	739-3	답	330	330	윤정식 외 1인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옥지 일주로 819-87	당초
41	광양	덕례	739-3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2	광양	덕례	739	주	684	684	윤정식 외 1인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옥지 일주로 819-87	당초
42	광양	덕례	739	주	684	68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3	광양	덕례	741	답	165	165	이금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66-5 한주빌라-401	당초
43	광양	덕례	741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4	광양	덕례	741-1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44	광양	덕례	741-1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5	광양	덕례	741-2	답	665	665	정현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9, 112동401호(좌동,대우1차아파트)	당초
45	광양	덕례	741-2	답	665	6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6	광양	덕례	741-3	답	165	165	정혜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76 기락타운 312-1505	당초
46	광양	덕례	741-3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7	광양	덕례	741-4	답	30	30	주식회사에스제이 에셋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8-3 사르망리프트 403	당초
47	광양	덕례	741-4	답	30	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48	광양	덕례	741-5	답	311	311	윤여균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017 사직쌍용여가 126-2204	당초
48	광양	덕례	741-5	답	311	31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49	광양	덕례	737	답	205	20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49	광양	덕례	737	답	205	20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0	광양	덕례	708	답	132	132	심정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41번길20,105동605호 (수영동,현대아파트)	당초
50	광양	덕례	708	답	132	13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1	광양	덕례	708-1	답	165	165	오창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123번길75,102동1003호 (학장동,2차삼성아파트)	당초
51	광양	덕례	708-1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2	광양	덕례	708-2	답	239	239	지지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보재로60,301동1002호 (신공덕동,신공덕3차삼성래미안아파트)	당초
52	광양	덕례	708-2	답	239	239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3	광양	덕례	708-3	답	462	462	성영숙 외 1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148,3동606호 (사파동,동양무궁화아파트)	당초
53	광양	덕례	708-3	답	462	46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4	광양	덕례	708-4	답	182	18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54	광양	덕례	708-4	답	182	18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5	광양	덕례	708-5	답	248	248	김종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번길 22, 102호(인계동 한일그린빌리지)	당초
55	광양	덕례	708-5	답	248	24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6	광양	덕례	708-6	답	467	46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56	광양	덕례	708-6	답	467	46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7	광양	덕례	708-7	답	185	185	이혜자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5번길12,비동206호 (대청동4가,대청맨션)	당초
57	광양	덕례	708-7	답	185	18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58	광양	덕례	708-8	답	270	270	임채순 외 2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봉호로68,103동104호 (봉호동,한림리츠빌아파트)	당초
58	광양	덕례	708-8	답	270	27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59	광양	덕례	735	답	157	157	김미정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63-6 -301	당초
59	광양	덕례	735	답	157	15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0	광양	덕례	735-3	답	197	197	최정숙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 11길 36-12	당초
60	광양	덕례	735-3	답	197	19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1	광양	덕례	735-4	답	177	177	제갈경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37-14 수성엘리트타운-503	당초
61	광양	덕례	735-4	답	177	17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2	광양	덕례	735-5	답	140	140	정갑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53-10	당초
62	광양	덕례	735-5	답	140	14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3	광양	덕례	735-6	답	164	164	김순옥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86 울산신천엠코타운 101-2004	당초
63	광양	덕례	735-6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4	광양	덕례	735-7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64	광양	덕례	735-7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5	광양	덕례	735-8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65	광양	덕례	735-8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6	광양	덕례	735-9	답	197	197	김보연 외 1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릉로 45길 64-20	당초
66	광양	덕례	735-9	답	197	19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7	광양	덕례	735-10	답	197	19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67	광양	덕례	735-10	답	197	19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68	광양	덕례	735-11	답	197	197	정유선	경상남도 창원시 상산구 기음동 12-12 효성기계아파트 에이-504	당초
68	광양	덕례	735-11	답	197	19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69	광양	덕례	735-12	답	197	197	우영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병암북로4번길37,1201호 (석동,상지약수아파트)	당초
69	광양	덕례	735-12	답	197	19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0	광양	덕례	735-13	답	241	241	김순애 외 1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888 삼한아파트 101-606	당초
70	광양	덕례	735-13	답	241	24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1	광양	덕례	735-14	답	200	200	최양순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태왕귀빈타운 105동 117호	당초
71	광양	덕례	735-14	답	200	20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2	광양	덕례	735-15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72	광양	덕례	735-15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3	광양	덕례	735-16	답	164	164	정명자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227-10	당초
73	광양	덕례	735-16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4	광양	덕례	735-17	답	164	164	김미정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63-6 -301	당초
74	광양	덕례	735-17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5	광양	덕례	735-18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75	광양	덕례	735-18	답	164	1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6	광양	덕례	731	답	327	32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76	광양	덕례	731	답	327	32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7	광양	덕례	730	답	3,283	3,283	김용주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876	당초
77	광양	덕례	730	답	3,283	3,28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78	광양	덕례	1613	도	5,648	2,235	국 (국토교통부)		당초
78	광양	덕례	1613	도	5,648	2,235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79	광양	덕례	707	답	1,296	1,29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79	광양	덕례	707	답	1,296	1,29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0	광양	덕례	733	답	1,507	1,50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0	광양	덕례	733	답	1,507	1,507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1	광양	덕례	728-2	답	661	66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1	광양	덕례	728-2	답	661	66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2	광양	덕례	729	임	1,448	1,44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2	광양	덕례	729	임	1,448	1,44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3	광양	덕례	732	답	235	23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3	광양	덕례	732	답	235	23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4	광양	덕례	728-1	답	1,812	1,81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4	광양	덕례	728-1	답	1,812	1,81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5	광양	덕례	1581	구	3,827	3,3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85-1	광양	덕례	1581	구	3,177	3,177	국 (국토교통부)		변경
85-2	광양	덕례	1581-9	구	162	162	국 (국토교통부)		변경
85-3	광양	덕례	1581-11	구	249	1	국 (국토교통부)		변경
86	광양	덕례	724-3	답	584	584	김성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4	당초
86	광양	덕례	724-3	답	584	58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7	광양	덕례	727	답	225	22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7	광양	덕례	727	답	225	22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88	광양	덕례	724	장	295	295	이평진	광양시 광양읍 외룡길33,707동1601호 (광양송보파인빌7차)	당초
88	광양	덕례	724	장	295	295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89	광양	덕례	724-4	도	78	78	공(광양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89	광양	덕례	724-4	도	78	78	공(광양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0	광양	덕례	725-2	도	3	3	공(광양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90	광양	덕례	725-2	도	3	3	공(광양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1	광양	덕례	724-5	답	169	169	김성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4	당초
91	광양	덕례	724-5	답	169	169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2	광양	덕례	723	대	153	153	김성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4	당초
92	광양	덕례	723	대	153	153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3	광양	덕례	725-1	답	288	288	김성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4	당초
93	광양	덕례	725-1	답	288	288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4	광양	덕례	720-2	답	143	143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94	광양	덕례	720-2	답	143	143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5	광양	덕례	725	장	1,755	1,755	이평진	광양시 광양읍 외룡길33,707동1601호 (광양송보파인빌7차)	당초
95	광양	덕례	725	장	1,755	1,755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6	광양	덕례	720-1	답	993	993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96	광양	덕례	720-1	답	993	993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7	광양	덕례	726-1	답	166	166	이치분 외 1인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768-14	당초
97	광양	덕례	726-1	답	166	166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98	광양	덕례	726-2	답	754	754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98	광양	덕례	726-2	답	754	754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99	광양	덕례	726-3	답	101	10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99	광양	덕례	726-3	답	101	10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00	광양	덕례	726-4	답	316	316	강주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753, 명륜쌍용여가 103-405	당초
100	광양	덕례	726-4	답	316	31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01	광양	덕례	726-5	답	422	422	강신재	울산시 북구 달천동 1-5 달천아이파크 1차 102-1601	당초
101	광양	덕례	726-5	답	422	42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02	광양	덕례	726-6	답	554	554	한광식	울산시 남구 문수로351번길 50	당초
102	광양	덕례	726-6	답	554	55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03	광양	덕례	726-7	답	182	182	채순옥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아파트 104-307	당초
103	광양	덕례	726-7	답	182	18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04	광양	덕례	726-8	답	166	166	미종신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872 삼한2차 202-1510	당초
104	광양	덕례	726-8	답	166	16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05	광양	덕례	1575	도	17,933	2,246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5	광양	덕례	1575	도	17,933	2,24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6	광양	덕례	719	답	165	165	유기훈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19, 새경남아파트 2동 101호	당초
106	광양	덕례	719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07	광양	덕례	719-1	도	55	48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7	광양	덕례	719-1	도	55	48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8	광양	덕례	719-4	답	165	165	조은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82-7	당초
108	광양	덕례	719-4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109	광양	덕례	719-5	답	165	165	김선옥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20, 원풍벽산아파트 306-1006	당초
109	광양	덕례	719-5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0	광양	덕례	719-6	답	165	165	이화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31, 경남아파트 2동 205호	당초
110	광양	덕례	719-6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1	광양	덕례	719-7	답	171	171	이미자 외 3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로 153	당초
111	광양	덕례	719-7	답	171	17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2	광양	덕례	719-8	답	330	330	조점선 외 1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1번길 28-6	당초
112	광양	덕례	719-8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3	광양	덕례	719-9	답	330	329	황지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58,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10-402	당초
113	광양	덕례	719-9	답	329	329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4	광양	덕례	719-10	답	330	330	정명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31, 대방덕산타운 105-1504	당초
114	광양	덕례	719-10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5	광양	덕례	719-11	답	231	231	김정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4-1003	당초
115	광양	덕례	719-11	답	231	23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6	광양	덕례	719-12	답	99	99	김윤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44번길 27	당초
116	광양	덕례	719-12	답	99	99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7	광양	덕례	719-13	답	264	52	최현종 외 1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76번길 17, 하이존텔2차 에이동 304호	당초
117	광양	덕례	719-13	답	52	5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18	광양	덕례	719-14	답	132	132	김보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194-42	당초
118	광양	덕례	719-14	답	132	13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119	광양	덕례	719-16	답	264	264	정명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31, 대방덕산타운 105-1504	당초
119	광양	덕례	719-16	답	264	2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0	광양	덕례	719-17	답	165	165	남희진 외 3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16, 경동메르빌2차 110-501	당초
120	광양	덕례	719-17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1	광양	덕례	719-18	답	264	264	강은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575, 우성아파트 116-905	당초
121	광양	덕례	719-18	답	264	264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2	광양	덕례	718-46	답	228	228	강상철 외 1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대대로 774, 성원아파트 506-1504	당초
122	광양	덕례	718-46	답	228	22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3	광양	덕례	718	답	166	166	김정이 외 1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80, 벚꽃그린빌주공4단지 421동 304호	당초
123	광양	덕례	718	답	166	16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4	광양	덕례	717	답	552	55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24	광양	덕례	717	답	552	55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5	광양	덕례	716-1	답	1,636	1,63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25	광양	덕례	716-1	답	1,636	1,636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6	광양	덕례	716-3	답	1,653	1,65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26	광양	덕례	716-3	답	1,653	1,65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7	광양	덕례	709	답	423	42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27	광양	덕례	709	답	423	42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28	광양	덕례	716-2	답	2,030	2,0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28	광양	덕례	716-2	답	2,030	2,0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129	광양	덕례	710-2	답	1,348	1,348	김정호 외 1인	광양시 금호로130 초원아파트 12-402	당초
129	광양	덕례	710-2	답	1,348	1,34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0	광양	덕례	715	답	2,182	2,18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30	광양	덕례	715	답	2,182	2,18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1	광양	덕례	714	답	119	119	이준석 외 1인	김해시 봉황동 백조아파트 2-1008호	당초
131	광양	덕례	714	답	119	119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2	광양	덕례	714-1	답	142	142	이미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3707동1504호 (별내동 쌍용에기아파트)	당초
132	광양	덕례	714-1	답	142	14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3	광양	덕례	714-2	답	110	110	정경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75 경남아너스빌 105-702	당초
133	광양	덕례	714-2	답	110	11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4	광양	덕례	714-3	답	330	330	임정엽 외 1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83-3 엄궁2차한신아파트 201-1002	당초
134	광양	덕례	714-3	답	330	33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5	광양	덕례	714-4	답	99	99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35	광양	덕례	714-4	답	99	99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6	광양	덕례	714-5	답	231	231	김정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83-1 문현삼성힐타워에아-1202	당초
136	광양	덕례	714-5	답	231	23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7	광양	덕례	707-4	답	1,491	1,49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37	광양	덕례	707-4	답	1,491	1,491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38	광양	덕례	710	답	1,323	1,32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38	광양	덕례	710	답	1,323	1,323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139	광양	덕례	713	답	1,752	1,75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39	광양	덕례	713	답	1,752	1,75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0	광양	덕례	710-1	답	288	288	김면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776 내리2후면시아 203-1004	당초
140	광양	덕례	710-1	답	288	28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1	광양	덕례	710-3	답	165	165	김순중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274	당초
141	광양	덕례	710-3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2	광양	덕례	710-4	답	165	165	나경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73-2 광안동 에스케이뷰 105-1402	당초
142	광양	덕례	710-4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3	광양	덕례	710-5	답	100	100	엄영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224번길 66-3(괴정동)	당초
143	광양	덕례	710-5	답	100	100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4	광양	덕례	710-6	답	132	132	허현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0,605호(풍호동/평화APT)	당초
144	광양	덕례	710-6	답	132	132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5	광양	덕례	710-7	답	198	198	김미향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 305동307호(당감동, 주공아파트)	당초
145	광양	덕례	710-7	답	198	198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6	광양	덕례	710-8	답	165	165	반양숙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5 주공아파트 402-106	당초
146	광양	덕례	710-8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7	광양	덕례	710-9	답	165	165	김미애 외 2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55번길	당초
147	광양	덕례	710-9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48	광양	덕례	710-10	답	165	165	김명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4-25	당초
148	광양	덕례	710-10	답	165	165	LF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 (권리자)	주소	비고
	시,읍	리			지적	편입			
149	광양	덕례	710-11	답	100	100	최영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아파트 14-1204	당초
149	광양	덕례	710-11	답	100	100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0	광양	덕례	710-12	답	231	231	김종만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96(용호동)	당초
150	광양	덕례	710-12	답	231	231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1	광양	덕례	707-5	답	1,684	1,684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51	광양	덕례	707-5	답	1,684	1,684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2	광양	덕례	712	답	1,974	1,374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52	광양	덕례	712	답	1,374	1,374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3	광양	덕례	707-1	답	1,000	1,000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53	광양	덕례	707-1	답	1,000	1,000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4	광양	덕례	711-3	답	495	495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54	광양	덕례	711-3	답	495	495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5	광양	덕례	711-2	답	661	661	신정순 외 1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0-1 우성베스트피아아파트 11-1305	당초
155	광양	덕례	711-2	답	661	661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6	광양	덕례	711-1	답	298	298	김현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34-1(당리동)	당초
156	광양	덕례	711-1	답	298	298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7	광양	덕례	700-2	구	33	33	김현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34-1	당초
157	광양	덕례	700-2	구	33	33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8	광양	덕례	711	답	519	519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58	광양	덕례	711	답	519	519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159	광양	덕례	701	답	3,240	3,240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당초
159	광양	덕례	701	답	3,240	3,240	LF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신사동,뉴서울빌딩)	변경

담양군 고시 제2016-79호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31(2016.9.8.)호로 인가 고시된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9. 22

담양군수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변경없음)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 게재생략
7.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담양군청 투자유치단(061-380-31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55,022,085	-	455,022,085	100.00	
도시지역		132,170,907	증) 1,277,173	133,448,080	29.32	
주거 지역	소 계	8,923,200	증) 796,519	9,719,719	2.12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증) 474,951	474,951	0.10	
	제1종 일반주거지역	7,533,584	증) 131,465	7,665,049	1.6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09,354	증) 190,103	1,299,457	0.28	
	제3종 일반주거지역	181,581	-	181,581	0.04	
	준주거지역	98,681	-	98,681	0.02	
상업 지역	소 계	255,601	증) 82,205	337,806	0.08	
	일반상업지역	207,276	-	207,276	0.05	
	근린상업지역	48,325	증) 82,205	130,530	0.03	
공업 지역	소 계	912,875	-	912,875	0.20	
	일반공업지역	554,634	-	554,634	0.12	
	준공업지역	358,241	-	358,241	0.08	
녹지 지역	소 계	122,079,231	증) 398,449	122,477,680	26.92	
	생산녹지지역	5,168,869	-	5,168,869	1.14	
	자연녹지지역	116,910,362	증) 398,449	117,308,811	25.78	
도시지역 미지정		1,277,173	감) 1,277,173	-	-	
관리 지역	소 계	116,382,023	-	116,382,023	25.58	
	보전관리지역	55,668,809	-	55,668,809	12.23	
	생산관리지역	18,647,693	-	18,647,693	4.10	
	계획관리지역	42,065,521	-	42,065,521	9.25	
농림지역		205,191,982	-	205,191,982	45.10	

주 : 기정면적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6-201호(2016.6.2.)에 근거함 (일부 합계 면적 오기정정)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이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허용	
1	담양읍 가산리 산54-5임 일원	도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48,336	80	80	•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공공시설(유치원)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2	담양읍 가산리 504-2답 일원			46,668		80	• 양호한 단독주택지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3	담양읍 가산리 475-9답 일원			25,918		80	
4	담양읍 가산리 472-10답 일원			27,575		80	
5	담양읍 가산리 471-5답 일원			43,077		80	
6	수북면 주평리 812-10답 일원			75,937		80	
7	수북면 주평리 821-4답 일원			190,481		80	
8	수북면 주평리 794-2답 일원			16,959		80	
9	담양읍 가산리 221-4답 일원	도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2,578	150	150	•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점포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10	담양읍 가산리 228-6답 일원			5,845		150	• 공공시설(공공청사)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11	담양읍 가산리 305-3답 일원			19,896		150	• 준주거시설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12	담양읍 가산리 331대 일원			7,767		150	• 준주거시설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13	담양읍 가산리 935-1전 일원			46,665		150	• 준주거시설 및 공공시설(학교, 문화시설) 건설 을 위한 용도세분
14	수북면 주평리 815-14답 일원			8,714		150	• 준주거시설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15	담양읍 가산리 산53임 일원	도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3,301	180	130	• 중저밀 공동주택지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16	담양읍 가산리 483-1답 일원			26,517		180	•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작물재배사 건설을 위한 용도세분
17	담양읍 가산리 478-6답 일원			58,375		180	
18	담양읍 가산리 482-1답 일원			6,483		180	
19	담양읍 가산리 477-2답 일원			15,427		180	
20	담양읍 가산리 232-1답 일원	도시 지역	근린상업 지역	69,906	500	500	• 상업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용 도세분
21	담양읍 가산리 222-11답 일원			12,299		500	• 상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세분
22	수북면 주평리 산3임 일원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	398,449	80	80	• 쾌적한 공원녹지 및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용 도세분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지구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8	가산	자 연 취락지구	담양읍 가산리 364 일원	-	74,593	잔고 제2010-332호 (' 10. 11. 05)	농림·계획관리
변경	28	가산	자 연 취락지구	담양읍 가산리 364 일원	-	72,156	잔고 제2010-332호 (' 10. 11. 05)	농림·계획관리
기정	332	주평1	자 연 취락지구	수북면 주평리 656 일원	-	16,105	잔고 제2010-332호 (' 10. 11. 05)	계획관리
변경	332	주평1	자 연 취락지구	수북면 주평리 656 일원	-	16,102	잔고 제2010-332호 (' 10. 11. 05)	계획관리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8	가산	• 면적 축소 - 면적 : 74,593㎡ → 72,156㎡, 감) 2,43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구역내 취락지구 제척
332	주평1	• 면적 축소 - 면적 : 16,105㎡ → 16,102㎡, 감) 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구역내 취락지구 제척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1,277,173	-	1,277,173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1,277,173	-	1,277,173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2	26,766	243,307	6	1,054	17,204	24	8,769	100,135	142	16,943	114,324
일반 도로	소계	125	23,058	207,474	6	1,054	17,204	24	8,769	100,135	95	13,235	90,135
	중로	19	6,652	98,538	2	503	11,694	7	4,281	64,215	10	1,868	22,629
	소로	106	16,406	108,936	4	551	5,510	17	4,488	35,920	85	11,367	67,506
보행자 도로	소계	47	3,708	24,189	-	-	-	-	-	-	47	3,708	24,189
	중로	1	175	2,332	-	-	-	-	-	-	1	175	2,332
	소로	46	3,533	21,857	-	-	-	-	-	-	46	3,533	21,857
기타		-	-	11,644	-	-	-	-	-	-	-	-	-

* 주 : 기타는 가각 및 완화차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1	24	보조간선도로	314	가산리230-1	삼다리675-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	2	22	보조간선도로	189	대리3-15	중로1-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317	중로1-1	중로1-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2	15	집산도로	95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3	15	집산도로	284	중로1-3	중로2-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4	15	집산도로	494	중로2-3	중로2-5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5	15	집산도로	902	중로1-3	중로2-6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6	15	집산도로	1,851	중로1-3	주평리95-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7	15	집산도로	338	중로2-5	중로3-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95	중로2-3	중로3-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107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3	12	국지도로	36	중로2-4	중로2-7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4	12	국지도로	49	중로2-4	중로2-7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5	12	집산도로	403	중로2-5	중로3-9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6	12	집산도로	414	중로2-5	중로3-5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7	12	국지도로	6	중로3-6	공동주택A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8	12	국지도로	6	중로2-5	공동주택A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9	12	집산도로	610	중로1-3	중로2-6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0	12	집산도로	142	중로2-6	두정리180구	일반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11	12	특수도로	175	중로1-1	중로2-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4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6	중로3-9	문화시설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6	중로3-9	학교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365	중로2-6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183	중로2-3	소로2-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203	중로1-3	소로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29	중로1-3	중로2-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388	중로2-5	중로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337	중로3-6	중로3-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151	중로3-6	소로2-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101	중로3-9	소로3-2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202	중로3-5	소로2-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244	중로2-6	중로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145	중로1-3	소로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1	8	국지도로	1,418	중로2-6	중로2-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162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3	8	국지도로	217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4	8	국지도로	160	중로2-6	소로2-1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192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156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17	8	국지도로	100	중로2-5	소로3-8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307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81	소로2-1	소로3-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198	소로2-2	소로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90	소로2-2	소로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89	소로2-2	소로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390	중로2-5	중로2-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	6	국지도로	343	중로2-5	중로3-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203	중로3-6	소로2-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9	6	국지도로	197	중로3-6	소로2-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소로2-5	소(특)3-10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1	6	국지도로	274	소로2-4	소로2-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2	6	국지도로	51	소로3-11	소로3-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3	6	국지도로	50	소로3-11	소로3-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4	6	국지도로	51	소로3-11	소로3-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5	6	국지도로	149	소로2-4	소로3-11	일반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6	6	국지도로	51	소로3-15	소로3-1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7	6	국지도로	54	소로2-4	3호 어린이공원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8	6	국지도로	51	소로3-17	소로3-1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9	6	국지도로	54	소로2-4	3호 어린이공원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0	6	국지도로	51	소로3-19	소로3-1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1	6	국지도로	50	소로2-4	소로(특) 3-10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2	6	국지도로	57	소로3-21	소로3-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3	6	국지도로	77	중로3-6	소로3-2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4	6	국지도로	174	소로2-6	소로2-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5	6	국지도로	174	소로2-6	소로2-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6	6	국지도로	53	소로3-27	2호완충녹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7	6	국지도로	95	중로3-9	2호완충녹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8	6	국지도로	80	소(특)3-114	4호 어린이공원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9	6	국지도로	58	소로2-9	소로3-2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0	6	국지도로	115	소로2-9	소로3-3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1	6	국지도로	198	소로3-36	소로3-3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2	6	국지도로	114	소로2-9	소로3-3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3	6	국지도로	82	소로3-36	소로3-3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4	6	국지도로	114	소로2-9	소로3-3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5	6	국지도로	86	소로3-36	소로3-3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6	6	국지도로	163	중로3-9	소로3-3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7	6	국지도로	186	중로3-9	소로2-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8	6	국지도로	205	소로3-40	소로3-4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9	6	국지도로	54	소로3-40	소로3-3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0	6	국지도로	224	중로1-3	중로2-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1	6	국지도로	214	중로2-6	소로3-4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2	6	국지도로	268	중로2-10	소로3-4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3	6	국지도로	96	소로1-4	소(특)3-1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4	6	국지도로	199	중로2-6	소로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5	6	국지도로	205	소로1-4	소로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6	6	국지도로	60	소로3-45	소로3-4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7	6	국지도로	239	소로1-4	2호경관녹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8	6	국지도로	82	소로1-4	소로3-4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9	6	국지도로	191	소로1-4	소로3-47	일반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50	6	국지도로	81	소로2-10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1	6	국지도로	99	소로2-10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2	6	국지도로	161	소로2-11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3	6	국지도로	165	소로2-11	소로2-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4	6	국지도로	85	소로2-11	소로3-5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5	6	국지도로	106	소로2-11	소로3-5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6	6	국지도로	335	소로2-11	소로2-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7	6	국지도로	149	소로2-11	소로3-5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8	6	국지도로	162	소로2-11	소로3-5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59	6	국지도로	79	소로2-13	소로3-6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0	6	국지도로	107	소로2-13	소로3-6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1	6	국지도로	109	소로2-11	소로3-6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2	6	국지도로	155	소로2-11	소로2-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3	6	국지도로	156	소로2-11	소로2-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4	6	국지도로	60	소로2-11	소로3-6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5	6	국지도로	98	소로2-11	소로3-6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6	6	국지도로	317	소로2-11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7	6	국지도로	10	소로3-66	소(특)3-12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8	6	국지도로	91	소로2-15	소로3-7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9	6	국지도로	62	소로2-15	소로3-7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0	6	국지도로	156	소로2-15	소(특)3-12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1	6	국지도로	3	소로2-11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2	6	국지도로	273	소로2-11	소로2-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3	6	국지도로	124	소로2-11	소로3-7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4	6	국지도로	123	소로2-11	소로3-7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5	6	국지도로	17	소로2-11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6	6	국지도로	208	소로2-16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7	6	국지도로	122	소로2-11	소로3-7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8	6	국지도로	122	소로2-11	소로3-7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9	6	국지도로	122	소로2-11	소로3-7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0	6	국지도로	6	소로2-11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1	6	국지도로	176	소로2-11	소로2-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2	6	국지도로	205	소로2-17	소로2-1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3	6	국지도로	108	중로2-5	소로2-1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4	4	국지도로	348	소로2-7	배수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5	6	국지도로	10	소로3-42	소(특)3-12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6	6	특수도로	61	소로1-1	소(특)3-87	보행자전용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87	6~15	특수도로	74	중로2-1	남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88	6	특수도로	152	중로1-1	남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89	6~15	특수도로	113	중로1-1	중로2-3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0	6	특수도로	119	중로1-1	중로2-3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1	6~15	특수도로	524	중로2-3	중로2-5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2	6	특수도로	25	중로2-4	중로3-3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3	6	특수도로	32	중로2-5	중로2-7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4	3	특수도로	70	공동주택A2 동측진입부	소로3-6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5	3	특수도로	180	공동주택A2 북측진입부	공동주택A2 동측진입부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6	3	특수도로	46	중로2-5	공동주택A2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7	6	특수도로	127	중로2-5	중로3-7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8	6	특수도로	76	중로3-7	소로3-7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99	6	특수도로	26	중로2-5	소로2-5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0	6	특수도로	13	중로3-5	소로3-10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1	6	특수도로	27	중로3-6	소로3-8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2	6	특수도로	52	소로2-5	소로3-9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3	6	특수도로	22	중로3-5	소로2-5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4	6	특수도로	397	중로2-5	중로3-9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5	6	특수도로	25	중로2-5	소로3-1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6	6	특수도로	58	소로3-11	소로3-1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7	6	특수도로	52	소로3-11	소로3-15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8	6	특수도로	28	중로1-3	소로3-2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09	6	특수도로	40	소로3-24	소로3-25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0	6	특수도로	22	소로2-8	소로3-25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1	6	특수도로	25	중로3-9	소로2-8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2	6	특수도로	65	중로3-9	1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3	6	특수도로	20	중로3-9	소로3-3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4	6	특수도로	10	중로3-9	소로3-28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5	6	특수도로	289	중로2-6	중로3-9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6	6	특수도로	172	중로2-6	소로1-4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7	6	특수도로	242	소로1-4	36호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8	6	특수도로	29	중로2-6	소로3-44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19	6	특수도로	29	소로3-44	소(특)3-117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0	6	특수도로	31	소로3-47	회룡천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1	6	특수도로	30	중로2-6	소로3-56	보행자전용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22	6	특수도로	10	소로2-11	서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3	6	특수도로	10	소로2-11	서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4	6	특수도로	14	46호 공공공지	소로3-67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5	6	특수도로	18	중로2-6	소로3-70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6	6	특수도로	28	중로2-6	소로3-72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7	6	특수도로	28	중로2-6	소로3-76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8	6	특수도로	28	중로2-6	소로3-8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29	6	특수도로	19	중로2-6	소로3-85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30	6	특수도로	38	중로1-3	소로3-42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131	6	특수도로	37	소로3-66	서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1	• 도로신설 - B=24m, L=31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1-2	• 도로신설 - B=22m, L=18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2-1	• 도로신설 - B=15m, L=31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2-2	• 도로신설 - B=15m, L=9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2-3	• 도로신설 - B=15m, L=28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2-4	• 도로신설 - B=15m, L=49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2-5	• 도로신설 - B=15m, L=90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2-6	• 도로신설 - B=15m, L=1,85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2-7	• 도로신설 - B=15m, L=33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1	• 도로신설 - B=12m, L=9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2	• 도로신설 - B=12m, L=10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3	• 도로신설 - B=12m, L=3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4	• 도로신설 - B=12m, L=4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5	• 도로신설 - B=12m, L=40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6	• 도로신설 - B=12m, L=41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7	• 도로신설 - B=12m, L=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8	• 도로신설 - B=12m, L=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9	• 도로신설 - B=12m, L=61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10	• 도로신설 - B=12m, L=14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중로 3-11	• 도로신설 - B=12m, L=17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1-1	• 도로신설 - B=10m, L=17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1-2	• 도로신설 - B=10m, L=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1-3	• 도로신설 - B=10m, L=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1-4	• 도로신설 - B=10m, L=36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	• 도로신설 - B=8m, L=18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2	• 도로신설 - B=8m, L=20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3	• 도로신설 - B=8m, L=12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4	• 도로신설 - B=8m, L=38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5	• 도로신설 - B=8m, L=33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6	• 도로신설 - B=8m, L=15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7	• 도로신설 - B=8m, L=10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8	• 도로신설 - B=8m, L=20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9	• 도로신설 - B=8m, L=24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0	• 도로신설 - B=8m, L=14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11	• 도로신설 - B=8m, L=1,41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2	• 도로신설 - B=8m, L=16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3	• 도로신설 - B=8m, L=21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4	• 도로신설 - B=8m, L=16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5	• 도로신설 - B=8m, L=19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6	• 도로신설 - B=8m, L=15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2-17	• 도로신설 - B=8m, L=10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	• 도로신설 - B=6m, L=30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	• 도로신설 - B=6m, L=8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	• 도로신설 - B=6m, L=19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	• 도로신설 - B=6m, L=9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	• 도로신설 - B=6m, L=8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	• 도로신설 - B=6m, L=39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	• 도로신설 - B=6m, L=34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	• 도로신설 - B=6m, L=20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	• 도로신설 - B=6m, L=19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	• 도로신설 - B=6m, L=1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	• 도로신설 - B=6m, L=27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	• 도로신설 - B=6m, L=5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3	• 도로신설 - B=6m, L=5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4	• 도로신설 - B=6m, L=5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15	• 도로신설 - B=6m, L=14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6	• 도로신설 - B=6m, L=5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7	• 도로신설 - B=6m, L=5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8	• 도로신설 - B=6m, L=5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9	• 도로신설 - B=6m, L=5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0	• 도로신설 - B=6m, L=5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1	• 도로신설 - B=6m, L=5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2	• 도로신설 - B=6m, L=5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3	• 도로신설 - B=6m, L=7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4	• 도로신설 - B=6m, L=17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5	• 도로신설 - B=6m, L=17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6	• 도로신설 - B=6m, L=5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7	• 도로신설 - B=6m, L=9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8	• 도로신설 - B=6m, L=8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29	• 도로신설 - B=6m, L=5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0	• 도로신설 - B=6m, L=11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1	• 도로신설 - B=6m, L=19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2	• 도로신설 - B=6m, L=11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3	• 도로신설 - B=6m, L=8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4	• 도로신설 - B=6m, L=11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5	• 도로신설 - B=6m, L=8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36	• 도로신설 - B=6m, L=16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7	• 도로신설 - B=6m, L=18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8	• 도로신설 - B=6m, L=20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39	• 도로신설 - B=6m, L=5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0	• 도로신설 - B=6m, L=22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1	• 도로신설 - B=6m, L=21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2	• 도로신설 - B=6m, L=26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3	• 도로신설 - B=6m, L=9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4	• 도로신설 - B=6m, L=19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5	• 도로신설 - B=6m, L=20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6	• 도로신설 - B=6m, L=6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7	• 도로신설 - B=6m, L=23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8	• 도로신설 - B=6m, L=8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49	• 도로신설 - B=6m, L=19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0	• 도로신설 - B=6m, L=8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1	• 도로신설 - B=6m, L=9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2	• 도로신설 - B=6m, L=16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3	• 도로신설 - B=6m, L=16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4	• 도로신설 - B=6m, L=8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5	• 도로신설 - B=6m, L=10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6	• 도로신설 - B=6m, L=33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57	• 도로신설 - B=6m, L=14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8	• 도로신설 - B=6m, L=16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59	• 도로신설 - B=6m, L=7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0	• 도로신설 - B=6m, L=10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1	• 도로신설 - B=6m, L=10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2	• 도로신설 - B=6m, L=15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3	• 도로신설 - B=6m, L=15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4	• 도로신설 - B=6m, L=6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5	• 도로신설 - B=6m, L=9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6	• 도로신설 - B=6m, L=31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7	• 도로신설 - B=6m, L=1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8	• 도로신설 - B=6m, L=9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69	• 도로신설 - B=6m, L=6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0	• 도로신설 - B=6m, L=15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1	• 도로신설 - B=6m, L=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2	• 도로신설 - B=6m, L=27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3	• 도로신설 - B=6m, L=12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4	• 도로신설 - B=6m, L=12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5	• 도로신설 - B=6m, L=1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6	• 도로신설 - B=6m, L=20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7	• 도로신설 - B=6m, L=12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78	• 도로신설 - B=6m, L=12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79	• 도로신설 - B=6m, L=12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0	• 도로신설 - B=6m, L=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1	• 도로신설 - B=6m, L=17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2	• 도로신설 - B=6m, L=20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3	• 도로신설 - B=6m, L=10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4	• 도로신설 - B= 4m, L=34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5	• 도로신설 - B=6m, L=1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6	• 도로신설 - B=6m, L=6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7	• 도로신설 - B=6-15m, L=7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8	• 도로신설 - B=6m, L=15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89	• 도로신설 - B=6-15m, L=11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0	• 도로신설 - B=6m, L=11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1	• 도로신설 - B=6-15m, L=52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2	• 도로신설 - B=6m, L=2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3	• 도로신설 - B=6m, L=3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4	• 도로신설 - B=3m, L=7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5	• 도로신설 - B=3m, L=18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6	• 도로신설 - B=3m, L=4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7	• 도로신설 - B=6m, L=12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98	• 도로신설 - B=6m, L=7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99	• 도로신설 - B=6m, L=26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0	• 도로신설 - B=6m, L=13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1	• 도로신설 - B=6m, L=2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2	• 도로신설 - B=6m, L=5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3	• 도로신설 - B=6m, L=2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4	• 도로신설 - B=6m, L=39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5	• 도로신설 - B=6m, L=2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6	• 도로신설 - B=6m, L=5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7	• 도로신설 - B=6m, L=5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8	• 도로신설 - B=6m, L=2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09	• 도로신설 - B=6m, L=4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0	• 도로신설 - B=6m, L=2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1	• 도로신설 - B=6m, L=2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2	• 도로신설 - B=6m, L=65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3	• 도로신설 - B=6m, L=2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4	• 도로신설 - B=6m, L=1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5	• 도로신설 - B=6m, L=28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6	• 도로신설 - B=6m, L=17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7	• 도로신설 - B=6m, L=242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8	• 도로신설 - B=6m, L=2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19	• 도로신설 - B=6m, L=2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120	• 도로신설 - B=6m, L=31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1	• 도로신설 - B=6m, L=3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2	• 도로신설 - B=6m, L=1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3	• 도로신설 - B=6m, L=10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4	• 도로신설 - B=6m, L=14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5	• 도로신설 - B=6m, L=1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6	• 도로신설 - B=6m, L=2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7	• 도로신설 - B=6m, L=2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8	• 도로신설 - B=6m, L=2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29	• 도로신설 - B=6m, L=19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30	• 도로신설 - B=6m, L=38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	소로 3-131	• 도로신설 - B=6m, L=37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선신설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개소	-	증) 10,446	10,446		
신설	1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232-5답 일원	-	증) 2,099	2,099		
신설	2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222-12답 일원	-	증) 995	995		
신설	3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328-1잡 일원	-	증) 1,036	1,036		
신설	4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955-26구 일원	-	증) 920	920		
신설	5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931전 일원	-	증) 1,369	1,369		
신설	6	주차장	수북면 주평리 816-4답 일원	-	증) 1,314	1,314		
신설	7	주차장	수북면 주평리 701-1전 일원	-	증) 1,290	1,290		
신설	8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504-4답 일원	-	증) 443	443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505-2답 일원	-	증) 163	163		
신설	10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504-2답 일원	-	증) 163	163		
신설	11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498-2답 일원	-	증) 163	163		
신설	12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498-3답 일원	-	증) 165	165		
신설	13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488-2답 일원	-	증) 165	165		
신설	14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488-2답 일원	-	증) 161	161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2,09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2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99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3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03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4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92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5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36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6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31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7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29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8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44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9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6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10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6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11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6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12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6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13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6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14	노외주차장	• 신설(면적:16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신설

3) 공간시설(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818	818		
신설	1	광장	근린광장	담양읍 가산리 329-7대 일원	-	증) 818	818	-	

○ 광장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광장	• 신설(면적:818㎡)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근린광장 신설

4)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개소	-	증) 211,680	211,680	-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수북면 주평리 산7임 일원	-	증) 192,294	192,294	-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220-2답 일원	-	증) 3,275	3,275	-	
신설	2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산54-8임 일원	-	증) 1,836	1,836	-	
신설	3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98-5답 일원	-	증) 3,214	3,214	-	
신설	4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81-1답 일원	-	증) 1,715	1,715	-	
신설	5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71-5답 일원	-	증) 1,543	1,543	-	
신설	6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812-3답 일원	-	증) 1,643	1,643	-	
신설	7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815-10답 일원	-	증) 2,700	2,700	-	
신설	8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701-1전 일원	-	증) 1,503	1,503	-	
신설	1	공원	소공원	담양읍 가산리505-1답 일원	-	증) 1,374	1,374	-	
신설	2	공원	소공원	담양읍 가산리 505-2답 일원	-	증) 583	583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 신설(면적:192,29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근린공원 신설
1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3,27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2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1,83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3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3,21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4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1,71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5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1,54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6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1,64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7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2,70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8	어린이공원	• 신설(면적:1,50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1	소공원	• 신설(면적:1,37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공원 신설
2	소공원	• 신설(면적:58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공원 신설

5)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9개소	-	증 75,326	75,326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233-5답 일원	-	증 4,146	4,146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472-2답 일원	-	증 9,209	9,209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471-2답 일원	-	증 928	928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수북면 주평리 812-4답 일원	-	증 6,440	6,440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	증 37,001	37,001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담양읍 가산리 산61-2임 일원	-	증 13,412	13,412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21-1답 일원	-	증 1,933	1,933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31-2답 일원	-	증 1,604	1,604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36-1답 일원	-	증 653	653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 신설(면적:4,14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 신설(면적:9,20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신설
3	완충녹지	• 신설(면적:928㎡)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신설
4	완충녹지	• 신설(면적:6,44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신설
1	경관녹지	• 신설(면적:37,00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 신설(면적:13,412㎡)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3	경관녹지	• 신설(면적:1,93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4	경관녹지	• 신설(면적:1,60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5	경관녹지	• 신설(면적:65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6) 공간시설(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40,949	40,949		
신설	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248전 일원	-	증) 2,197	2,197		
신설	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65도 일원	-	증) 507	507		
신설	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221-7답 일원	-	증) 833	833		
신설	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222-9답 일원	-	증) 942	942		
신설	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64-2도 일원	-	증) 3,564	3,564		
신설	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7-37구 일원	-	증) 125	125		
신설	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27답 일원	-	증) 400	400		
신설	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5-5답 일원	-	증) 541	541		
신설	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5-3답 일원	-	증) 139	139		
신설	1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	증) 371	371		
신설	1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	증) 529	529		
신설	1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	증) 647	647		
신설	1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4-8임 일원	-	증) 419	419		
신설	1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	증) 516	516		
신설	1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	증) 605	605		
신설	1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산9임 일원	-	증) 659	659		
신설	1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4-1답 일원	-	증) 1,160	1,160		
신설	1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7-29구 일원	-	증) 409	409		
신설	1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82-1답 일원	-	증) 279	279		
신설	2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36전 일원	-	증) 907	907		
신설	2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35전 일원	-	증) 353	353		
신설	2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	증) 501	501		
신설	2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15-4답 일원	-	증) 1,067	1,067		
신설	2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6-4답 일원	-	증) 827	827		
신설	2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7-2답 일원	-	증) 480	480		
신설	2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9-2답 일원	-	증) 719	719		
신설	2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2-15답 일원	-	증) 185	185		
신설	2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2-15답 일원	-	증) 304	304		
신설	2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10답 일원	-	증) 777	77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7답 일원	-	증)	626	626	
신설	3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2답 일원	-	증)	283	283	
신설	3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03임 일원	-	증)	110	110	
신설	3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04-1도 일원	-	증)	698	698	
신설	3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20도 일원	-	증)	690	690	
신설	3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1-10답 일원	-	증)	505	505	
신설	3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7도 일원	-	증)	177	177	
신설	3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7도 일원	-	증)	242	242	
신설	3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8도 일원	-	증)	831	831	
신설	3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8도 일원	-	증)	230	230	
신설	40	공공공지	수북면 두정리 185-2전 일원	-	증)	2,797	2,797	
신설	4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2-1답 일원	-	증)	694	694	
신설	42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3 답 일원	-	증)	958	958	
신설	43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9답 일원	-	증)	449	449	
신설	44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10답 일원	-	증)	599	599	
신설	45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12답 일원	-	증)	288	288	
신설	4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14답 일원	-	증)	732	732	
신설	47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6-7 답 일원	-	증)	614	614	
신설	48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0-8답 일원	-	증)	144	144	
신설	49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0-6답 일원	-	증)	495	495	
신설	50	공공공지	수북면 두정리 323-7답 일원	-	증)	902	902	
신설	5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1-7답 일원	-	증)	750	750	
신설	52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7-1답 일원	-	증)	606	606	
신설	53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6-10답 일원	-	증)	594	594	
신설	54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4-1 답 일원	-	증)	282	282	
신설	55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7-2답 일원	-	증)	371	371	
신설	5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7-2 답 일원	-	증)	2,457	2,457	
신설	57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46-8 도 일원	-	증)	423	423	
신설	58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46-2도 일원	-	증)	144	144	
신설	59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795답 일원	-	증)	786	786	
신설	60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796답 일원	-	증)	401	401	
신설	6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3답 일원	-	증)	109	109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신설(면적:2,19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	공공공지	• 신설(면적:50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	공공공지	• 신설(면적:83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	공공공지	• 신설(면적:942㎡)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	공공공지	• 신설(면적:3,56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6	공공공지	• 신설(면적:12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7	공공공지	• 신설(면적:40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8	공공공지	• 신설(면적:54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9	공공공지	• 신설(면적:13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0	공공공지	• 신설(면적:37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1	공공공지	• 신설(면적:52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2	공공공지	• 신설(면적:64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3	공공공지	• 신설(면적:41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4	공공공지	• 신설(면적:51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5	공공공지	• 신설(면적:60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6	공공공지	• 신설(면적:65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7	공공공지	• 신설(면적:1,16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8	공공공지	• 신설(면적:40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19	공공공지	• 신설(면적:27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0	공공공지	• 신설(면적:90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1	공공공지	• 신설(면적:35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2	공공공지	• 신설(면적:50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3	공공공지	• 신설(면적:1,06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4	공공공지	• 신설(면적:82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5	공공공지	• 신설(면적:48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6	공공공지	• 신설(면적:71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7	공공공지	• 신설(면적:18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8	공공공지	• 신설(면적:30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29	공공공지	• 신설(면적:77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0	공공공지	• 신설(면적:62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공공공지	• 신설(면적:28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2	공공공지	• 신설(면적:11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3	공공공지	• 신설(면적:698㎡)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4	공공공지	• 신설(면적:69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5	공공공지	• 신설(면적:50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6	공공공지	• 신설(면적:17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7	공공공지	• 신설(면적:242㎡)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8	공공공지	• 신설(면적:83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39	공공공지	• 신설(면적:23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0	공공공지	• 신설(면적:2,79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1	공공공지	• 신설(면적:69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2	공공공지	• 신설(면적:958㎡)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3	공공공지	• 신설(면적:44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4	공공공지	• 신설(면적:59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5	공공공지	• 신설(면적:288㎡)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6	공공공지	• 신설(면적:732㎡)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7	공공공지	• 신설(면적:61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8	공공공지	• 신설(면적:14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49	공공공지	• 신설(면적:49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0	공공공지	• 신설(면적:902㎡)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1	공공공지	• 신설(면적:75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2	공공공지	• 신설(면적:60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3	공공공지	• 신설(면적:59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4	공공공지	• 신설(면적:282㎡)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5	공공공지	• 신설(면적:37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6	공공공지	• 신설(면적:2,45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7	공공공지	• 신설(면적:42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8	공공공지	• 신설(면적:144㎡)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59	공공공지	• 신설(면적:78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60	공공공지	• 신설(면적:40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61	공공공지	• 신설(면적:109㎡)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신설

7)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단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2,925	2,925	-	
신설	1	배수시설	담양읍 주평리 산3임 일원	-	증) 2,925	2,925	-	

○ 수도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배수시설	• 신설(면적:2,925㎡)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배수시설 신설

8)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2,833	2,833		
신설	1	공공청사	-	담양읍 가산리 228-6답 일원	-	증) 2,833	2,833	-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신설(면적:2,833㎡)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청사 신설

9)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	증) 21,924	21,924	-	
신설	1	학교	유치원	담양읍 가산리 291-1전 일원	-	증) 3,486	3,486	-	
신설	2	학교	중·고등학교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	증) 18,438	18,438	-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치원	• 신설(면적:3,486㎡)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치원 신설
2	중·고등학교	• 신설(면적:18,438㎡)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중·고등학교 신설

10) 방재시설(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8	소하천 (가산천)	하천	담양읍 가산리 705-4	담양읍 가산리 507-3	-	1.45	-	-	담양군고시 제2008-006호 (2008. 3. 4.)	
변경	18	소하천 (가산천)	하천	담양읍 가산리 705-4	담양읍 가산리 507-3	첨단문화 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1.45 (0.05)	2~11 (14)	(842)	담양군고시 제2008-006호 (2008. 3. 4.)	
기정	124	소하천 (회룡천)	하천	수북면 두정리 6	수북면 삼다리 219-2	-	3.05	3~45	-	담양군고시 제2008-006호 (2008. 3. 4.)	
변경	124	소하천 (회룡천)	하천	수북면 두정리 6	수북면 삼다리 219-2	첨단문화 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3.00 (2.16)	3~45 (12~24)	(40,586)	담양군고시 제2008-006호 (2008. 3. 4.)	
기정	127	소하천 (구련천)	하천	수북면 두정리 536	수북면 주평리 30-3	-	2.30	1~30	-	담양군고시 제2008-006호 (2008. 3. 4.)	
변경	127	소하천 (구련천)	하천	수북면 두정리 536	수북면 주평리 30-3	첨단문화 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2.29 (0.82)	1~30 (12~14)	(8,756)	담양군고시 제2008-006호 (2008. 3. 4.)	

*주 : 괄호안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내 연장, 폭원, 면적임

○ 하천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가산천	• 구역내 하천 선형변경 (연장 변경없음)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선형 변경
124	회룡천	•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 L=3.05km→3.00km(감 0.05k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선형 변경
127	구련천	•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 L=2.30km→2.29km(감 0.01km)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선형 변경

11) 방재시설(저수지)

○ 저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47,937	47,937		
신설	1	고가제	저수지	담양읍 가산리 298-6유 일원	-	증) 47,937	47,937	-	

○ 저수지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고가제	• 신설(면적:47,937㎡)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저수지 신설

12) 방재시설(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	증) 25,454	25,454	-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담양읍 가산리 227-1답 일원	-	증) 9,461	9,461	-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담양읍 가산리 281답 일원	-	증) 5,172	5,172	-	
신설	3	유수지	저류시설	수북면 주평리 814-13답 일원	-	증) 2,761	2,761	-	
신설	4	유수지	저류시설	수북면 주평리 836-9답 일원	-	증) 8,060	8,060	-	

○ 유수지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 신설(면적:9,46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수지 신설
2	유수지	• 신설(면적:5,172㎡)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수지 신설
3	유수지	• 신설(면적:2,761㎡)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수지 신설
4	유수지	• 신설(면적:8,060㎡)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수지 신설

13) 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종합의료시설	담양읍 가산리 232-7답 일원	-	증) 6,578	6,578	-	

○ 종합의료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종합의료시설	• 신설(면적:6,578㎡)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종합의료시설 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담양군 고시 제2016-80호

담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담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의 시행자 변경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 9. 22

담양군수

□ 시행자 지정(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창평면 광덕리 산14-8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담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명칭 : 담양 죽향CC(대중제 9H) 조성사업	변경없음	
3. 면적 또는 규모	396,180 m ² (대중제 9홀)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95번지 - 성명 : (주)진흥개발 대표이사 김승원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3-8 (본촌동) - 성명 : (주)진흥개발 대표이사 김승원	주소 및 법인명 변경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없음	
6. 기타문의	전화 061-380-3100(담양군 도시디자인과)		

담양군 고시 제2016-81호

담양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담양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 변경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 9. 22

담양군수

□ 시행자 지정(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1. 사업시행자의 위치	전라남도 창평면 광덕리 산24-4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담양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담양 죽향JC 진입도로(소로2-418) 확충사업	변경없음	
3. 면적 또는 규모	2,026㎡(L=251.0m, B=8.0m)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95번지 - 성명: (주)진흥개발 대표이사 김승원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3-8 (본촌동) - 성명: (주)진흥개발 대표이사 김승원	주소 및 법인명 변경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없음	
6. 기타문의	전화 061-380-3100(담양군 도시디자인과)		

해남군 고시 제2016-156호

**해남 화원농협 주유소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일원의 화원농협 부지 내 주유소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6. 9. 22

해남군수

1.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도 관계도서를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9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리 지 역	32,294.8	증 1,877.2	34,172	100.0	
계획관리지역	32,294.8	증1,609.2	33,904	99.2	
생산관리지역	-	증268	268	0.8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증가면적(1,877.2㎡)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면적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32,294.8	증1,877.2	34,172		
19	청 용 지 구	산업유통 개발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	32,294.8	증1,877.2	34,172	2009.1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9	청용지구	구역확장 A=32,294.8㎡→34,172㎡	회원 청용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내 주유소 설치 및 군계획시설(완충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32,294.8	증1,877.2	34,172		
19	지구단위 계획구역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	32,294.8	증1,877.2	34,172	2009.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9	청용지구	구역확장 A=32,294.8㎡→34,172㎡	회원 청용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내 주유소 설치 및 군계획시설(완충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1	국지 도로	23	국도77호선	김치공장 구역내	일반 도로	-	2009.1	진입 도로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 결정(변경)조서 : 폐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 장(k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폐지	공동구 ①	공동구	김치 공장	저수조 및 기계실	-	0.04	80		지하 공동구

○ 공동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공동구 ①	공동구	폐지 A=80㎡, L=0.04k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에 의한 공동구 설치지역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시설 폐지

다)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①	완충녹지	화원면 청용리 789입 일원	4,662.2	증1,316	5,968.2	2009.1	완충 녹지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녹지 ①	완충녹지	1. 구정오차 정정 •A=4,662.2㎡ → 5,396.2㎡ 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충녹지 포함 •A=5,396.2㎡ → 7,022.2㎡ 증1,626㎡ 3.유통용지에 면한 완충녹지 축소 •A=7,022.2㎡ → 5,682.2㎡ 감1,054㎡	•구적오차 정정 •김치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시설로 지구 단위계획구역 밖의 결정된 완충녹지(B=5m)를 효 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역내로 포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유소 설치를 위해 유통 용지에 해당하는 구간의 완충녹지 축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총괄조서 :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32,294.8	증)1,877.2	34,172	
기정	1	1-1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7번지 일원	244.3	-	244.3	경비실
폐지		1-2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7번지 일원	(80)	감(80)	-	공동구
기정		1-3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7번지 일원	263	-	263	진입도로
신설		1-4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9번지 일원	-	증)277	277	진입도로
기정	2	2-1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7번지 일원	690.8	-	690.8	가축사
변경	3	3-1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7번지 일원	20,065.6	증)50	20,115.60	공장 및 부대시설
변경	4	4-1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789번지 일원	4,662.2	증)1,306	5,968.20	완충녹지
변경		4-2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9번지 일원	6,398.9	감)2,916.76	3,452.14	조성녹지
신설	5	5-1	해남군 회원명 청용리 609번지 일원	-	증)3,160.96	3,160.96	주유소

※ ()는 지하

3-1 공업용지 변경면적은 유통용지 신설에 따른 용지의 정형화를 따른 면적임

4-1 완충녹지 변경면적은 구적오차(구적면적 5,396㎡), 완충녹지 변경(구역내 포함, 축소)을 반영한 면적임

4-2 조성녹지 변경면적은 구적오차(구적면적 5,548㎡), 유통용지 신설을 반영한 면적임

3) 건축물에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 공공시설용지 : 변경

가구번호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1-1	용 도	•지정용도 : 공장 안내 및 경비	
		건 폐 울	기정	•40% 이하
			변경	•60% 이하
		용 적 울	•150%이하	
		높 이	•1층이하	
		배 치	•지형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향 배치	
		형 태	•기능에 적합한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주거용지 : 변경

가구번호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	2-1	용 도	•지정용도 : 공장 주거시설	
		건 폐 울	기정	•40% 이하
			변경	•60% 이하
		용 적 울	•150%이하	
		높 이	•1층이하	
		배 치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공업용지 : 변경

가구번호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3	3-1	용 도	•지정용도 : 공장 주거시설	
		건 폐 울	기정	•40% 이하
			변경	•60% 이하
		용 적 울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동향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유통용지 : 신설

가구번호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5	5-1	용 도	•지정용도 : 주유소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50%이하
		높 이	-
		배 치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동향 배치
		형 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주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부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녹색)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무안군 고시 제2016-129호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 9. 22

무안군수

1.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교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교촌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정비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84-5번지 일원	55,105	-	55,105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5,105	-	55,105	100.0	
단독주택용지		43,828	감) 728	43,100	78.2	
공공시설용지		11,277	증) 728	12,005	21.8	
	도로	6,420	-	6,420	11.7	3개 노선
	주민복지시설	771	-	771	1.4	
	주차장	548	증) 728	1,276	2.3	2개소
	소공원	240	-	240	0.4	3개소
	골목길	3,298	-	3,298	6.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3	1,365 (550)	18,190 (6,420)	1	275 (184)	2,750 (1,840)	2	1,090 (366)	15,440 (4,580)	-	-	-
중로	1	960 (236)	14,400 (3,540)	-	-	-	1	960 (236)	14,400 (3,540)	-	-	-
소로	2	405 (314)	3,790 (2,880)	1	275 (184)	2,750 (1,840)	1	130 (130)	1,040 (1,040)	-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	15	국지 도로	960 (236)	대로 3-1호선	중로 2-13호선	일반 도로	-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275 (184)	중로 2-13호선	중로 2-2호선	일반 도로	-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130 (130)	중로 2-7호선	소로 1-16호선	일반 도로	-	전남285호 (86. 6.26)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548	증) 728	1,276	-	
변경	주차장 2	주차장	교촌리 286	308	증) 728	1,036	전남285호 (86. 6.26)	
기정	주차장 3	주차장	교촌리 112-3	240	-	240	전남285호 (86. 6.2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위치 : 교촌리 296-1 일원 → 교촌리 286 일원 - 면적 : 308m² → 1,036m² 증) 728m²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기본방향

○ 가구의 형태는 현행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설정

2) 도로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의해 분할되는 획지에 대한 대책

○ 분할되는 토지는 단독개량, 합필유도, 보상대책수립으로 나누어 제시

○ 단독개량은 도로 편입후 잔여면적이 주택의 건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적용

○ 합필유도는 잔여면적이 60m² 이하 혹은 60m²가 넘어도 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 보상대책 수립은 잔여면적이 좁아 주변토지와 합필하기 곤란하거나 토지의 전부가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지목이 도로로서 현저히 공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주택용지	지정용도	•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상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 수		• 5층 이하	

5.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교촌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교촌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84-5번지 일원	55,105	-	55,105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3	1,365 (550)	18,190 (6,420)	1	275 (184)	2,750 (1,840)	2	1,090 (366)	15,440 (4,580)	-	-	-
중로	1	960 (236)	14,400 (3,540)	-	-	-	1	960 (236)	14,400 (3,540)	-	-	-
소로	2	405 (314)	3,790 (2,880)	1	275 (184)	2,750 (1,840)	1	130 (130)	1,040 (1,040)	-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	15	국지 도로	960 (236)	대로 3-1호선	중로 2-13호선	일반 도로	-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275 (184)	중로 2-13호선	중로 2-2호선	일반 도로	-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130 (130)	중로 2-7호선	소로 1-16호선	일반 도로	-	전남285호 (86. 6.26)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548	증) 728	1,276	-	
변경	주차장 2	주차장	교촌리 286	308	증) 728	1,036	전남285호 (86. 6.26)	
기정	주차장 3	주차장	교촌리 112-3	240	-	240	전남285호 (86. 6.2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위치 : 교촌리 296-1 일원 → 교촌리 286 일원 - 면적 : 308㎡ → 1,036㎡ 증) 728㎡	•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548	증) 728	1,276	-	
변경	주차장 2	주차장	교촌리 286 일원	308	증)728	1,036	전남285호 (86. 6.26)	
기정	주차장 3	주차장	교촌리 112-3	240	-	240	전남285호 (86. 6.26)	

■ 공동이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차장2	• 주차장 변경 - 위치 : 교촌리 296-1 일원 → 교촌리 286 일원 - 면적 : 308㎡ → 1,036㎡ 증) 728㎡	•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주택용지	지정용도	•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상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도시 경관	• 건축물 등이 지역경관과 조화된 Human Scale의 분명한 도시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정비구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망점 정비를 통한 양호한 조망 유도	
	가로 경관	• 담장 형태는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권장 •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좋은 것을 사용권장 • 시각적 개방감 확보(돌출된 담장 등 통행 방해물의 설치금지) •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양쪽 측면으로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확폭을 통해 가로 경관 개선 및 보행활성화 유도 • 건축물의 보호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구역내 돌출간판 등 광고물 규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경관	• 친환경적 단지계획으로 기존지형을 최대한 보존 • 도로개설시 잔여부지 소공원 조성을 통한 녹화 및 인근 주민과 친화 공간 확보 • 건축물의 보호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구역내 돌출간판 등 광고물 규제	
환경 보전	동식물	• 계절의 변화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의 선정으로 시각적 경험이 다양하도록 유도	
	수질	• 정비사업 시행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계획에 부합되게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	
	폐기물	• 종량제 실시, 분리수거, 컨테이너 수집,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통 설치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경관	• 도로 개설시 잔여부지 녹화(소공원, 식재) •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기후와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향토수종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재난 방지	수해	• 가능한 현 지반상태를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안전을 고려한 옹벽설치 •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기존의 우수 및 오수배출을 위한 관거 설치는 도로구조에 맞추어 계획 •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수 및 하수구의 용량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토사 제거	
	화재	•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소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각 필지는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 • 건물 신축시 불연재 사용 • 도로변의 무분별한 생활, 영업, 광고용품에 대한 정비를 통해 유사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통행로 확보	
	교통	• 정비구역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2007년 ~ 2010년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현지개량사업

○ 단독개량(단독주택)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

○ 공동개량(다가구, 다세대주택) :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 시행

○ 공공시설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은 무안군이 사업시행

자. 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 무안군수

○ 주택개량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동수	구성비(%)	비 고
계	-	76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11	14.5	
개량대상	현지개량지역내의 노후불량 건축물	49	65.4	
철거대상	정비기산시설로 인한 철거 건축물	16	21.3	

※ 신축시 단독주택지 1가구당 1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

② 성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성남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정비구역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1번지 일원	30,325	-	30,325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0,325	-	30,325	100.0	
단독주택용지		26,774	증) 173	26,947	88.9	
공공시설용지		3,551	감) 173	3,378	11.1	
	도로	1,960		1,960	6.5	
	주차장	487	감) 173	314	1.0	
	소공원	186		186	0.6	
	골목길 정비	628		628	2.1	
	공동이용시설	290		290	0.9	기존공동이용시설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소로	3	405 (314)	3,790 (2,880)	-	-	-	2	433 (227)	3,464 (1,816)	1	199 (24)	1,194 (144)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53 (102)	중로 1-1호선	소로 1-11호선	일반 도로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80 (125)	중로 3-1호선	중로 2-9호선	일반 도로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99 (24)	중로 1-1호선	소로 2-32호선	일반 도로		전남285호 (86. 6.26)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487	감) 173	314	-	
기정	주차장 4	주차장	성남리 233	314	-	314	전남285호 (86. 6.26)	
변경	주차장 5	주차장	성남리 253-5	173	감) 173	-	전남285호 (86. 6.2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주차장 5	• 주차장 폐지	• 주차장 위치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폐지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기본방향

○ 가구의 형태는 현행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설정

2) 도로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의해 분할되는 획지에 대한 대책

○ 분할되는 토지는 단독개량, 합필유도, 보상대책수립으로 나누어 제시

○ 단독개량은 도로 편입후 잔여면적이 주택의 건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적용

○ 합필유도는 잔여면적이 60㎡ 이하 혹은 60㎡가 넘어도 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 보상대책 수립은 잔여면적이 좁아 주변토지와 합필하기 곤란하거나 토지의 전부가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지목이 도로로서 현저히 공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주택용지	지정용도	•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상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 수		• 5층 이하	

5.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성남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	성남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1번지 일원	30,325	-	30,325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소로	3	405 (314)	3,790 (2,880)	-	-	-	2	433 (227)	3,464 (1,816)	1	199 (24)	1,194 (144)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53 (102)	중로 1-1호선	소로 1-11호선	일반 도로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80 (125)	중로 3-1호선	중로 2-9호선	일반 도로		전남285호 (86. 6.26)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99 (24)	중로 1-1호선	소로 2-32호선	일반 도로		전남285호 (86. 6.26)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487	감) 173	314	-	
기정	주차장 4	주차장	성남리 233	314	-	314	전남285호 (86. 6.26)	
폐지	주차장 5	주차장	성남리 253-5	173	감) 173	-	전남285호 (86. 6.2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주차장 5	• 주차장 폐지	• 주차장 위치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마을회관 및 노인정	무안읍 성남리 227번지	290	한옥구조로 신설 및 변경
기정	소공원-1	무안읍 성남리 222-4번지 일원	59	
기정	소공원-2	무안읍 성남리 255-1번지 일원	64	
기정	소공원-3	무안읍 성남리 33번지 일원	63	
기정	주차장-1	무안읍 성남리 233번지 일원	314	친환경 주차장 조성
폐지	주차장-2	무안읍 성남리 253-5번지 일원	173	친환경 주차장 조성

■ 공동이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주차장 5	• 주차장 폐지	• 주차장 위치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폐지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주택용지	지정용도	•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상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도시 경관	• 건축물 등이 지역경관과 조화된 Human Scale의 분명한 도시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정비구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망점 정비를 통한 양호한 조망 유도	
	가로 경관	• 담장 형태는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권장 •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좋은 것을 사용권장 • 시각적 개방감 확보(돌출된 담장 등 통행 방해물의 설치금지) •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양쪽 측면으로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확폭을 통해 가로 경관 개선 및 보행활성화 유도 • 건축물의 보호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구역내 돌출간판 등 광고물 규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경관	• 친환경적 단지계획으로 기존지형을 최대한 보존 • 도로개설시 잔여부지 소공원 조성을 통한 녹화 및 인근 주민과 친화 공간 확보 • 건축물의 보호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구역내 돌출간판 등 광고물 규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보전	동식물	• 계절의 변화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의 선정으로 시각적 경험이 다양하도록 유도	
	수질	• 정비사업 시행시 인구 및 생활수준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계획에 부합되게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	
	폐기물	• 종량제 실시, 분리수거, 컨테이너 수집,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통 설치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경관	• 도로 개설시 잔여부지 녹화(소공원, 식재) •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기후와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향토수종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재난 방지	수해	• 가능한 현 지반상태를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안전을 고려한 옹벽설치 •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기존의 우수 및 오수배출을 위한 관거 설치는 도로구조에 맞추어 계획 •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수 및 하수구의 용량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토사 제거	
	화재	•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소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각 필지는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 • 건물 신축시 불연재 사용 • 도로변의 무분별한 생활, 영업, 광고용품에 대한 정비를 통해 유사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통행로 확보	
	교통	• 정비구역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2007년 ~ 2009년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현지개량사업

○ 단독개량(단독주택)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

○ 공동개량(다가구, 다세대주택) :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 시행

○ 공공시설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은 무안군이 사업시행

자. 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 무안군수

○ 주택개량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기준	동수	구성비(%)	비고
계	-	99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26	26.3	
개량대상	현지개량지역내의 노후불량 건축물	54	54.5	
철거대상	정비기간시설로 인한 철거 건축물	19	19.2	

※ 신축시 단독주택지 1가구당 1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

③ 월암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월암1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56-5번지 일원	29,550	-	29,550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9,550	-	29,550	100.0	
주택용지 (현지개량)		25,856	증) 42	25,932	87.8	
공공시설용지		3,694	감) 42	3,618	12.2	
	도로	2,680	-	2,680	9.1	2개노선
	주차장	572	감) 59	513	1.7	1개소
	소공원	442	감) 17	425	1.4	1개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2	-	600 (410)	-	-	-	1	8	300 (110)	1	6	300
중로	-	-		-	-	-	-	-	-	-	-	-
소로	2	-	600 (410)	-	-	-	1	8	300 (110)	1	6	300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300 (110)	대로 3-1	중로 1-1	일반 도로	월암1 정비구역	77.01.27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300	소로 2-5	소로 2-8	일반 도로	월암1 정비구역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주차장	일로읍 월암리 326-1 일원	572	감) 59	513	전고166호 (08.08.0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일로읍 월암리 326-25 일원 → 일로읍 월암리 326-1 일원 - 면적 : 572㎡ → 513㎡ 감) 59㎡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	공원	소공원	일로읍 월암리 157-5 일원	442	감) 17	42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공원	-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일로읍 월암리 326-1번지 일원 → 일로읍 월암리 157-5 일원 - 면적 : 442㎡ → 425㎡ 감) 17㎡	기 개설된 공원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무안군 조례)
용적률		• 200% 이하 (무안군 조례)
높 이		•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 4층 이하
연면적		• 적용하지 아니함

5.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일로읍 월암1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	월암1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56-5번지일원	29,550	-	29,55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2	-	600 (410)	-	-	-	1	8	300 (110)	1	6	300
중로	-	-		-	-	-	-	-	-	-	-	-
소로	2	-	600 (410)	-	-	-	1	8	300 (110)	1	6	300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300 (110)	대로 3-1	중로 1-1	일반 도로	월암1 정비구역	77.01.27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300	소로 2-5	소로 2-8	일반 도로	월암1 정비구역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주차장	일로읍 월암리 326-1 일원	572	감) 59	513	전고166호 (08.08.0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일로읍 월암리 326-25 일원 → 일로읍 월암리 326-1 일원 - 면적 : 572㎡ → 513㎡ 감) 59㎡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	공원	소공원	일로읍 월암리 157-5 일원	442	감) 17	42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공원	-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일로읍 월암리 326-1번지 일원 → 일로읍 월암리 157-5 일원 - 면적 : 442㎡ → 425㎡ 감) 17㎡	기 개설된 공원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본 정비구역은 현재 마을회관 1개소가 기 운영중에 있어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무안군 조례)
용적률		• 200% 이하 (무안군 조례)
높 이		• 적용하지 않음
층 수		• 4층 이하
연면적		• 적용하지 않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 전라남도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무안경관기본계획 내용 반영 • 기존 지형/지세를 고려한 배치로 자연 순응형 경관형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건축유형의 신축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정비 • 가로변 식재담장 및 건축물 정비를 통해서 주거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행공간의 확보 및 가로경관의 창출을 도모	
환경 보전	•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집중관리하며, 생활하수 및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배수관망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 대상지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수거장비를 현대화하고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는 가연성 및 비가연성으로 구분하여 가연성은 소각처리 • 정비대상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공지의 비율을 높이고 도로의 포장과 가로수를 증대시켜 대기오염의 농도를 최소화	
재난 방지	• 화재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한 방화대책을 수립 • 홍수시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해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함 • 옹벽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되 주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진출입 및 도시미관을 고려토록 함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2008년 ~ 2012년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현지개량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수행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극소화하고 공공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
-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음
-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고 남는 대지 중 건축이 불가능한 사유지는 보상금 지원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인접 국·공유지가 있어 합병을 희망할 경우 우선 분양함

자. 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 무안군수
- 주택개량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기준	동수	구성비(%)	비고
계	-	129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10	7.6	
개량대상	현지개량지역내의 노후불량 건축물	102	79.1	
철거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인한 철거 건축물	17	13.3	

카.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구분		조성규모	비고
도로 조성	소로 3-17호선	• A = 1,800m ² , L = 300m, B= 6m	1개노선
	주차장	• 위치 : 일로읍 월암리 326-1 일원 • 면적 : 513m ²	1개소
	소공원	• 위치 : 일로읍 월암리 157-5 일원 • 면적 : 425m ²	1개소
	골목길정비	• A = 1,732m ² , L = 433m, B = 4m	

④ 외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외반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575-1번지 일원	23,580	-	23,580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3,580	-	23,580	100.0	
주택용지 (현지개량)		18,715	감) 1,664	17,051	72.3	
공공시설용지		4,865	증) 1,664	6,529	27.7	
	도로	4,048	-	4,048	17.2	3개노선
	주차장	419	증) 17	436	1.8	1개소
	소공원	398	증) 1,647	2,045	8.7	1개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3	-	589 (452)	1	10	255 (216)	2	8	334 (236)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3	-	589 (452)	1	10	255 (216)	2	8	334 (236)	-	-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55 (216)	중로 2-2	중로 2-1	일반 도로	외반 정비구역	72.12.10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69 (101)	중로 3-2	소로 2-3	일반 도로	외반 정비구역	72.12.10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65 (135)	중로 2-2	중로 2-1	일반 도로	외반 정비구역	72.12.10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4	주차장	현경면 외반리 571-1번지 일원	419	증) 17	436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현경면 외반리 574-1번지 일원 → 현경면 외반리 571-1 일원 - 면적 : 419㎡ → 436㎡ 증) 17㎡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2	공원	소공원	현경면 외반리 575-1번지 일원	398	증) 1,647	2,04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공원	-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현경면 외반리 574-1번지 일원 → 현경면 외반리 575-1 일원 - 면적 : 398㎡ → 2,045㎡ 증) 1,647㎡	기 개설된 공원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무안군 조례)
용적률		• 200% 이하 (무안군 조례)
높 이		•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 4층 이하
연면적		• 적용하지 아니함

5.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현경면 외반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0	외반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575-1번지 일원	23,580	-	23,58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3	-	589 (452)	1	10	255 (216)	2	8	334 (236)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3	-	589 (452)	1	10	255 (216)	2	8	334 (236)	-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55 (216)	중로 2-2	중로 2-1	일반 도로	외반 정비구역	72.12.10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69 (101)	중로 3-2	소로 2-3	일반 도로	외반 정비구역	72.12.10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65 (135)	중로 2-2	중로 2-1	일반 도로	외반 정비구역	72.12.10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4	주차장	현경면 외반리 571-1번지 일원	419	증) 17	436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현경면 외반리 574-1번지 일원 → 현경면 외반리 571-1 일원 - 면적 : 419㎡ → 436㎡ 증) 17㎡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2	공원	소공원	현경면 외반리 575-1번지 일원	398	증) 1,647	2,04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공원	-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현경면 외반리 574-1번지 일원 → 현경면 외반리 575-1 일원 - 면적 : 398㎡ → 2,045㎡ 증) 1,647㎡	기 개설된 공원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설치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무안군 조례)
용적률		• 200% 이하 (무안군 조례)
높 이		•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 4층 이하
연면적		• 적용하지 아니함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 전라남도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무안경관기본계획 내용 반영 • 기존 지형/지세를 고려한 배치로 자연 순응형 경관형성 •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건축유형의 신축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정비 • 가로변 식재담당 및 건축물 정비를 통해서 주거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행공간의 확보 및 가로경관의 창출을 도모	
환경 보전	•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집중관리하며, 생활하수 및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배수관망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 대상지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수거장비를 현대화하고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는 가연성 및 비가연성으로 구분하여 가연성은 소각처리 • 정비대상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공지의 비율을 높이고 도로의 포장과 가로수를 증대시켜 대기오염의 농도를 최소화	
재난 방지	• 화재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한 방화대책을 수립 • 홍수시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해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함 • 옹벽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되 주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진출입 및 도시미관을 고려토록 함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2008년 ~ 2012년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현지개량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수행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극소화하고 공공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
-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음
-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고 남는 대지 중 건축이 불가능한 사유지는 보상금 지원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인접 국·공유지가 있어 합병을 희망할 경우 우선 분양함

자. 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 무안군수
- 주택개량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기준	동수	구성비(%)	비고
계	-	81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18	22.2	
개량대상	현지개량지역내의 노후불량 건축물	48	59.3	
철거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인한 철거 건축물	15	18.5	

카.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구분		조성규모	비고
도로 조성	소로 2-1호선	• A = 808㎡, L = 101m, B= 8m	
	소로 2-3호선	• A = 1,080㎡, L = 135m, B= 8m	
주차장		• 위치 : 현경면 외반리 571-1번지 일원 • 면적 : 436㎡	1개소
소공원		• 위치 : 현경면 외반리 575-1번지 일원 • 면적 : 2,045㎡	1개소

⑤ 신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정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137-3번지 일원	29,380	-	29,380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9,380	-	29,380	100.0	
주택용지 (현지개발)		23,393	감) 801	22,592	76.9	
공공시설용지		5,987	증) 801	6,788	23.1	
	도로	5,547	-	5,547	18.9	5개노선
	주차장	440	증) 801	1,241	4.2	1개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5	-	2,070 (602)	-	-	-	4	-	1,332 (532)	1	12	738 (70)
중로	3	-	1,553 (313)	-	-	-	2	15	815 (243)	1	12	738 (70)
소로	2	-	517 (289)	-	-	-	2	8	517 (289)	-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5	보조 간선 도로	373 (165)	중로 1-1	중로 2-2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 도로	442 (78)	중로 2-1	해제 도시지역 남측 구역계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도로	738 (70)	중로 3-1	중로 3-2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353 (125)	중로 2-1	중로 3-5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64	중로 2-2	중로 3-4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주차장	해제면 신정리 10-47 일원	440	증) 801	1,241	전고166호 (08.08.0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해제면 신정리 142-2번지 일원 → 해제면 신정리 10-47일원 - 면적 : 440m² → 1,241m² 증) 801m²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무안군 조례)
용적률		• 200% 이하 (무안군 조례)
높 이		• 적용하지 아니함
층 수		• 4층 이하
연면적		• 적용하지 아니함

5.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해제면 신정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2	신정 주거환경정비구역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137-3번지 일원	29,380	-	29,38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단위 : m)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노선수	폭원	연장
합계	5	-	2,070 (602)	-	-	-	4	-	1,332 (532)	1	12	738 (70)
중로	3	-	1,553 (313)	-	-	-	2	15	815 (243)	1	12	738 (70)
소로	2	-	517 (289)	-	-	-	2	8	517 (289)	-	-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5	보조 간선 도로	373 (165)	중로 1-1	중로 2-2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 도로	442 (78)	중로 2-1	해제 도시지역 남측 구역계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도로	738 (70)	중로 3-1	중로 3-2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353 (125)	중로 2-1	중로 3-5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64	중로 2-2	중로 3-4	일반 도로	신정 정비구역	'80.7.16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주차장	해제면 신정리 10-47 일원	440	증 801	1,241	전고166호 (08.08.0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해제면 신정리 142-2번지 일원 → 해제면 신정리 10-47일원 - 면적 : 440m² → 1,241m² 증 801m²	기 개설된 주차장 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및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설치계획 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무안군 조례)
용적률		• 200% 이하 (무안군 조례)
높 이		• 적용하지 않음
층 수		• 4층 이하
연면적		• 적용하지 않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 전라남도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무안경관기본계획 내용 반영 • 기존 지형/지세를 고려한 배치로 자연 순응형 경관형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건축유형의 신축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정비 • 가로변 식재담장 및 건축물 장비를 통해서 주거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행공간의 확보 및 가로경관의 창출을 도모	
환경 보전	•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집중관리하며, 생활하수 및 우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배수관망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 대상지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수거장비를 현대화하고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는 가연성 및 비가연성으로 구분하여 가연성은 소각처리 • 정비대상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공지의 비율을 높이고 도로의 포장과 가로수를 증대시켜 대기오염의 농도를 최소화	
재난 방지	• 화재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한 방화대책을 수립 • 홍수시 하수관망에 대한 정기적 관리를 통해 우수의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함 • 옹벽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되 주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진출입 및 도시미관을 고려토록 함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2008년 ~ 2012년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현지개량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수행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극소화하고 공공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
-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음
-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고 남는 대지 중 건축이 불가능한 사유지는 보상금 지원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인접 국·공유지가 있어 합병을 희망할 경우 우선 분양함

자. 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 무안군수
- 주택개량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기준	동수	구성비(%)	비고
계	-	85	100.0	
존치대상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	10	11.8	
개량대상	현지개량지역내의 노후불량 건축물	56	65.9	
철거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인한 철거 건축물	19	22.3	

카.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구분		조성규모	비고
도로 조성	중로 2-1호선	• A = 2,475㎡, L = 165m, B = 15m	
	중로 3-2호선	• A = 840㎡, L = 70m, B = 12m	
주차장		• 위치 : 해제면 신정리 10-47 일원 • 면적 : 1,241㎡	1개소
골목길 정비		• A = 936㎡, L = 234m, B = 4m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4	10	국지 도로	295	중로1-1	중로1-1	일반 도로	-	전고114호 02.5.31	
변경	소로	1	14	10	국지 도로	295	중로1-1	중로1-1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1	107	10	국지 도로	35	소로1-105	소로3-137	일반 도로	-	무고15호 09.9.21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1-14	소로1-14	○선형 변경	○2002년 재정비 선형으로 원상복귀하라는 감사지적사항으로 이에 따른 선형 변경
폐지	소로1-107	-	○노선 폐지	○현재 인접한 다른 위치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소로1-107호선을 폐지를 하여도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하여 노선 폐지

무안군 고시 제2016-130호

무안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16-65호(2016.05.26)로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주차장, 시장)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 9. 22

무안군수

1. 무안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2. 무안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3. 무안 군계획시설(주차장, 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조서 : 다음
4. 관계서류는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8) 및 허가경제과(061-450-57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6	주차장	무안읍 교촌리 75-4일원	4,733	증 185	4,918	무안군 고시 2014-59 (2014.04.24)	시장 중복결정 (204㎡),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1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6	주차장	○변 경 - 위치 : 무안읍 교촌리 75-4일원 - 면적 : 4,733㎡ → 4,918㎡	○분할·확정측량에 따른 현황 반영 및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부 시장과 중복결정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

군계획시설(주차장, 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서

1. 위 치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성내리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주차장, 시장) 사업

○ 명 칭 : 무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 사업면적 및 규모 (변경)

○ 면 적 : 21,660㎡ (21,679㎡ → 21,660㎡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 규 모 : 주차장 1개소(A=4,733㎡ → 4,918㎡, 시장과 중복면적:204㎡),
시장 1개소(A=16,94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무안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 초 : 2015.04.16. ~ 2016.08.31.

○ 변 경 : 2015.04.16. ~ 2016.12.30.(기간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세목조서 : 다음

○ 주차장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유자	주 소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1	무안읍 교촌리	73-0	창	286	19		19	무안군						
2	무안읍 교촌리	74-1	창	2,012	173	감) 1	172	무안군						분할측량
3	무안읍 교촌리	75-01	답	250	127		127	무안군						
4	무안읍 교촌리	75-02	답	217	217		217	무안군						
5	무안읍 교촌리	75-03	답	1,078	1,078		1,078	무안군						
6	무안읍 교촌리	75-04	답	1,651	1,651		1,651	무안군						
7	무안읍 교촌리	75-08	도	335	215	감) 3	212	국토교통부						분할측량
8	무안읍 교촌리	75-20	답	430	430		430	무안군						
9	무안읍 교촌리	75-21	도	166	166		166	국토교통부						
10	무안읍 교촌리	75-23	도	41	41		41	국토교통부						
11	무안읍 교촌리	75-25	구	233	130	감) 1	129	국토교통부						분할측량
12	무안읍 교촌리	75-26	구	85	85		85	국토교통부						
13	무안읍 교촌리	75-27	구	47	47		47	국토교통부						
14	무안읍 교촌리	79-1	임	364	333	감) 14	319	무안군						분할측량
15	무안읍 교촌리	79-17	임	21	21		21	무안군						
16	무안읍 교촌리	75-12	답	1,208	-	증) 17	17	무안군						시장중복
17	무안읍 교촌리	75-13	답	312	-	증) 23	23	무안군						시장중복
18	무안읍 교촌리	75-14	답	948	-	증) 72	72	무안군						시장중복
19	무안읍 교촌리	75-15	답	1,285	-	증) 91	91	무안군						시장중복
20	무안읍 교촌리	75-17	구	40	-	증) 1	1	국토교통부						시장중복
계					4,733	증) 185	4,918							

○ 시장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건축물	비고
						소유자	주 소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1	무안읍 성내리	21-06	답	1,624	1,624	무안군						
2	무안읍 성내리	21-07	답	662	662	무안군						
3	무안읍 성내리	21-09	답	431	431	무안군						
4	무안읍 성내리	21-11	답	1,494	1,494	무안군						
5	무안읍 성내리	21-13	답	1,504	1,504	무안군						
6	무안읍 성내리	21-15	답	376	376	무안군						
7	무안읍 성내리	21-17	답	2,072	2,072	무안군						
8	무안읍 성내리	21-23	답	64	64	무안군						
9	무안읍 성내리	21-24	답	88	88	무안군						
10	무안읍 성내리	21-25	답	35	35	전라남도						
11	무안읍 성내리	21-26	도	938	938	무안군						
12	무안읍 성내리	25-16	도	46	46	농림수산식품부						
13	무안읍 성내리	25-26	도	237	237	국토교통부						
14	무안읍 성내리	25-27	도	9	9	농림수산식품부						
15	무안읍 성내리	26-17	구	1,137	1,137	농림수산식품부						
16	무안읍 성내리	26-27	구	6	6	농림수산식품부						
17	무안읍 성내리	26-28	구	44	44	농림수산식품부						
18	무안읍 성내리	26-30	구	79	79	농림수산식품부						
19	무안읍 성내리	26-31	구	6	6	농림수산식품부						
20	무안읍 성내리	26-32	구	84	84	농림수산식품부						
21	무안읍 교촌리	74-04	묘	69	69	무안군						
22	무안읍 교촌리	74-05	창	150	150	무안군						
23	무안읍 교촌리	75-12	답	1,208	1,208	무안군						
24	무안읍 교촌리	75-13	답	312	312	무안군						
25	무안읍 교촌리	75-14	답	948	948	무안군						
26	무안읍 교촌리	75-15	답	1,285	1,285	무안군						
27	무안읍 교촌리	75-16	도	223	223	국토교통부						
28	무안읍 교촌리	75-17	구	40	40	국토교통부						
29	무안읍 교촌리	75-18	구	135	135	국토교통부						
30	무안읍 성내리	271	전	549	549	무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건축물	비고
						소유자	주 소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31	무안읍 성내리	272-09	잡	670	670	무안군						
32	무안읍 성내리	272-10	잡	330	330	무안군						
33	무안읍 성내리	272-11	도	3	3	무안군						
34	무안읍 성내리	359-7	도	88	88	국토교통부						
계				16,855	16,855							

함평군 공고 제2016-606호

함평 내교지구 1단계 침수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함평 내교지구 1단계 침수정비사업에 따른 함평읍 도시계획도로(중로1-903,소로2-1,2-4,3-3) 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22

함평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0-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도로((중로1-903,소로2-1,2-4,3-3)개설
 - 나. 명 칭 : 함평 내교지구 1단계 침수정비사업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7,736㎡
 - 나. 규 모 : 배수로정비 및 도로개설 L=593m, B=8.0m~20.5m
4.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함평군수
 - 나. 주 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공 일 : 2016. 10. (인가후)
 - 나. 준공예정일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열람기간 : 2016. 9. 22. ~ 2016. 10. 6.(14일간)
9. 열람장소 : 함평군 전략경영과
10.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함평군 전략경영과(☎061-320-38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공부상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41,234	7,736						
소로						23,257	4,235						
소로 2-4호선						5,628	1,644						
1	함평읍	내교리	210	9	도	1,756	45	함평군	국유지				
2	함평읍	내교리	210	11	대	267	267	함평군	국유지				
3	함평읍	내교리	186	6	답	436	289	조성범	전남 함평군 함평읍 가각리 852				함평군
4	함평읍	내교리	185	1	답	462	447	함평군	국유지				
5	함평읍	내교리	184	2	답	48	48	함평군	국유지				
6	함평읍	내교리	184		답	1,965	283	이승동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5				
7	함평읍	내교리	179	5	답	561	132	함평군	국유지				
8	함평읍	내교리	176	3	답	133	133	장홍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7				
소로 2-1호선						8,352	1,292						
1	함평읍	내교리	176	4	답	1,480	201	박병진	광주시 서구 천변좌하로 476(쌍촌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 설정	
2	함평읍	내교리	176		답	3,503	429	대한예수교 침례회 함평교회	전남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65-40				
3	함평읍	내교리	66		대	852	406	이정례 외 1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815				
4	함평읍	내교리	806	2	구거	159	36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5	함평읍	내교리	65	1	도	1,262	11	국토해양부	국유지				
6	함평읍	내교리	67	2	답	913	194	사회복지 법인 함평삼애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79				
7	함평읍	내교리	806	4	구거	183	15	국토해양부	국유지				
소로 3-3호선						9,277	1,299						
1	함평읍	내교리	193	4	답	1,333	220	함평농업 협동조합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03-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공부상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2	함평읍	내교리	192	10	답	558	160	함평군	국유지				
3	함평읍	내교리	186	6	답	436	79	조성범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52				함평군
4	함평읍	내교리	186		잡	309	2	이미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09-57	함평농업 협동조합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3-1	근저당 설정	
5	함평읍	내교리	186	7	답	177	177	조성범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52				함평군
6	함평읍	내교리	186	3	답	34	4	장철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52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 설정	함평군
7	함평읍	내교리	186	2	대	166	42	장철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7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6	근저당 설정	함평군
8	함평읍	내교리	182	5	대	331	56	장철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8	이혜자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195,106동403호	근저당 설정	함평군
9	함평읍	내교리	182	6	답	305	228	고필주 외 1인	광주시 남구 봉선동 988 라인하이츠A 107-712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근저당 설정	
10	함평읍	내교리	174		체	2,244	155	함평군	국유지				
11	함평읍	내교리	186	10	답	156	31	함평군	국유지				
12	함평읍	내교리	185		답	721	20	함평군	국유지				
13	함평읍	내교리	185	1	답	462	15	함평군	국유지				
14	함평읍	내교리	179	2	대	1,825	6	함평군	국유지				
15	함평읍	내교리	183	1	답	26	26	고필주	광주시 남구 봉선동 988 라인하이츠A 107-712				
16	함평읍	내교리	182	12	대	150	34	이종섭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82-12				
17	함평읍	내교리	182	13	대	44	44	이승동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6				
종로						17,977	3,501						
종로 1-903호선						17,977	3,501						
1	함평읍	내교리	173	3	답	86	85	장홍규	내교리 197번지	함평농업 협동조합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3-1	근저당 설정	
2	함평읍	내교리	85	1	답	451	9	함평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공부상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	함평읍	내교리	173	4	답	15	15	장홍규	내교리 197번지	함평농업 협동조합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3-1	근저당 설정	
4	함평읍	내교리	85	3	답	23	23	문성수	기각리 1001-9번지				
5	함평읍	내교리	84	1	답	226	226	함평군					
6	함평읍	내교리	85	4	답	456	456	함평군					
7	함평읍	내교리	85	2	답	1,509	50	문성수	기각리 1001-9번지				함평군
8	함평읍	내교리	84	2	답	46	46	장정애	내교리 209-22번지				함평군
9	함평읍	내교리	81	1	답	302	302	김종옥	내교리 82-2번지				
10	함평읍	내교리	82	4	대	392	392	함평군					
11	함평읍	내교리	82	6	대	583	583	함평군					함평군
12	함평읍	내교리	76	3	답	5	5	함평군					
13	함평읍	내교리	67	3	도	3,732	44	국(건설부)					
14	함평읍	내교리	834		구	445	17	국(농림부)					
15	함평읍	내교리	828	7	답	224	1	문성수	기각리 1001-9번지				
16	함평읍	내교리	834	3	구	227	65	국(국토해 양부)					
17	함평읍	내교리	828	20	도	5,591	103	국(건설부)					
18	함평읍	내교리	82	2	대	1,999	85	한경추	내교리 82-2번지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 설정	
19	함평읍	내교리	173	2	답	702	31	장홍규	내교리 197번지	함평농업 협동조합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93-1	근저당 설정	
20	함평읍	내교리	81	3	답	612	612	함평군					
21	함평읍	내교리	173	1	답	351	351	함평군					

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토지 소유자		실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함평읍	내교리	210	10	데크	데크(구적산출)	22.00	m ²	염연규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길 134-5	염연규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길 134-5	
2	함평읍	내교리	209	57	건물	플라스틱(2.0*0.6)	9.50	m ²	이미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09-57	이미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09-57	
3	함평읍	내교리	179	9	건물	슬레이트(2.0*0.7)	1.40	m ²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읍	내교리	〃	〃	정화조		1.00	EA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읍	내교리	〃	〃	메타세콰 이어	10년생	5.00	주					
	함평읍	내교리	〃	〃	오동나무	10년생	2.00	주					
	함평읍	내교리	〃	〃	소나무	10년생	1.00	주					
	함평읍	내교리	〃	〃	은행나무	10년생	7.00	주					
	함평읍	내교리	〃	〃	전나무	10년생	6.00	주					
	함평읍	내교리	〃	〃	단풍나무	5년생	2.00	주					
4	함평읍	내교리	185 외1		웬스	철재(65.0*1.7)	110.50	m ²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185-1 번지
	함평읍	내교리	〃	〃	웬스	철재(59.0*1.2)	70.80	m ²					
	함평읍	내교리	〃	〃	웬스	철재(21.0*0.6)	12.60	m ²					
5	함평읍	내교리	179	12	건물	슬레이트 (4.5*5.5)+(4.0*2.5) +(3.0*4.0)	46.80	m ²	정순심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교촌길 111-5	정순심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교촌길 111-5	
6	함평읍	내교리	66		건물	조립식(22.5*10.0)	225.00	m ²	이정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815	이정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815	
	함평읍	내교리	〃	〃	건물	조립식(13.5*9.0)	121.00	m ²					
7	함평읍	내교리	193	4	건물	조립식(12.0*5.0)	60.00	m ²	함평농 업협동 조합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바람길 42			
	함평읍	내교리	〃	〃	건물	조립식(4.0*3.0)	12.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건물	조립식(5.0*1.8)	9.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웬스	철재(36.0*1.7)	61.20	m ²					
	함평읍	내교리	〃	〃	벗나무	5년생	3.00	주					
8	함평읍	내교리	186	6	건물	조립식(14.5*7.0) +(3.0*1.7)	106.60	m ²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토지 소유자		실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함평읍	내교리	186	2	주택(1층)	시멘벽돌/스라브	109.08	m ²	장철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7	장철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7	
	함평읍	내교리	〃	〃	주택(2층)	시멘벽돌/강판	67.14	m ²					
	함평읍	내교리	〃	〃	창고 보일러실	시멘벽돌/스라브	32.30	m ²					
	함평읍	내교리	〃	〃	화장실	조적조/스라브	2식						
	함평읍	내교리	〃	〃	심야전기 보일러		1.00						
	함평읍	내교리	〃	〃	장독대		1.00						
	함평읍	내교리	〃	〃	계단	콘크리트	1.00						
	함평읍	내교리	〃	〃	담장	소계							
	함평읍	내교리	〃	〃	-	적벽돌	63.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	블록	8.80	m ²					
	함평읍	내교리	〃	〃	대문	철재/스라브	1.00						
	함평읍	내교리	〃	〃	미당포장	타일	96.50	m ²					
	함평읍	내교리	〃	〃	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10.35	m ²					
	함평읍	내교리	〃	〃	화단	소계							
	함평읍	내교리	〃	〃	-	자연석	1.00						
	함평읍	내교리	〃	〃	-	향나무	1.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	감나무	7.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	지두	1.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	매실	1.00	m ²					
10	함평읍	내교리	182	6	창고	시멘벽돌/스라브	33.66	m ²	이종섭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82-12	이종섭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82-12	
	함평읍	내교리	〃	〃	대문	철재/스라브	1.00						
	함평읍	내교리	〃	〃	담장	블록	11.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세차장	철파이프/스레트	67.50	m ²					
	함평읍	내교리	〃	〃	사무실	조립식판넬	10.53	m ²					
	함평읍	내교리	〃	〃	화장실	조립식판넬	1.65	m ²					
	함평읍	내교리	〃	〃	폐수처리 기계실	철파이프/강판	4.32	m ²					
	함평읍	내교리	〃	〃	가추	소 계							
	함평읍	내교리	〃	〃	-	철파이프/판넬	12.19	m ²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토지 소유자		실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함평읍	내교리	182	6	-	철파이프/강판	6.60	m ²					
	함평읍	내교리	〃	〃	컨테이너	소 계							
	함평읍	내교리	〃	〃	-	5*3	1.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	5*3	1.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입간판		1.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바닥포장	콘크리트 아스콘	70.00	m ²					
	함평읍	내교리	〃	〃	사다리	철재	1.00	m ²					
11	함평읍	내교리	184		조립식		2.00	EA	이승동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5			
	함평읍	내교리	〃	〃	컨테이너	철재	1.00	EA					
12	함평읍	내교리	186	7	컨테이너	철재	1.00	EA	조성범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52			
13	함평읍	내교리	182	6	컨테이너	철재	2.00	EA	고필주 외1인	광주시 남구 봉산동 988 라인하이츠A 107-712			
14	함평읍	내교리	185	1	조명		3.00	EA	함평군	국유지			
15	함평읍	내교리	〃	〃	가로등		1.00	EA					
16	함평읍	내교리	176	2	가로등		1.00	EA	함평군	국유지			
17	함평읍	내교리	193	4	체신주		1.00	EA					
18	함평읍	내교리	174		체신주		1.00	EA					
19	함평읍	내교리	185	1	한전주		1.00	EA					
20	함평읍	내교리	176		한전주		1.00	EA					
21	함평읍	내교리	66		한전주		1.00	EA					
22	함평읍	내교리	193	4	한전주		2.00	EA					
23	함평읍	내교리	192	10	한전주		1.00	EA					
24	함평읍	내교리	186	7	한전주		1.00	EA					
25	함평읍	내교리	182	13	간판		1.00	EA	이승동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5			